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2016. 11

아울러 본 책자는 2016년도 11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질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016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제1장 한국의 과세제도


| | |
|---|----|
| I.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 3 |
| 1. 과세대상 | 5 |
| 2. 납세의무자 | 6 |
| 3.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6 |
|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7 |
| 5. 신고납부 | 12 |
| 6.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 13 |
| 7. 재외국민 인감경유 제도 | 15 |
| <참고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 17 |
| II.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 19 |
| 1. 과세대상 | 21 |
| 2. 납세의무자 | 22 |
|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22 |
| 4. 세율 | 23 |
| 5. 신고납부 | 24 |
| <참고 : 상속세 계산 흐름도> | 25 |



| | |
|--|----|
| III.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 27 |
| 1. 과세대상 | 29 |
| 2. 납세의무자 | 31 |
|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31 |
| 4.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 32 |
| 5. 비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설 | 33 |
| 6. 신고납부 | 33 |
| <참고 : 증여세 계산 흐름도> | 34 |
| | |
| IV.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37 |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39 |
| 2. 신고의무자 | 39 |
| 3. 신고의무면제자 | 40 |
| 4. 신고대상범위 | 40 |
| 5. 신고하여야 할 내용 | 41 |
| 6.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 41 |
| 7.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41 |
| | |
| V.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 43 |
|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 | 45 |
| 2.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 45 |
|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46 |
| 4. 거주기간의 계산 | 47 |
|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 48 |
| 6.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49 |

| | |
|---|----|
| VI. 이전가격 개념 | 51 |
| 1. 이전가격 개념 | 53 |
| 2. 정상가격의 개념(ALP, Arm's Length Price) | 54 |
| 3. 정상가격 산출방법 | 54 |
| 4.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 56 |
| 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 56 |

제2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 | |
|--|----|
| I. 금융자산 투자 관련 | 61 |
| 1. 해외에서 국내 계좌 개설 방법 | 63 |
| 2. 국내 송금액에 대한 한국 국세청 자료 통보 | 64 |
| 3. 친인척 명의로 국내 송금시 문제점 | 65 |
| 4. 국내 친인척에 대한 자금대여 절차 | 66 |
| 5. 영주권자의 국내 펀드·증권 투자 절차 | 67 |
| 6.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한 원금의 회수절차 | 68 |
| 7.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한 원금을 해외에서 회수가능 여부 | 69 |
| 8. 국내에서 해외 송금시 한국 국세청 통보기준 | 70 |
| | |
| II. 부동산 투자 관련 | 71 |
| 9. 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 73 |
| 10. 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 | 74 |
| 11. 영주권자의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 | 76 |
| 12.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 77 |
| 13. 인감증명이 없는 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 78 |
| 14.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79 |
| 15.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및 미신고시 불이익 | 80 |
| 16. 국내 상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영위 방법 | 81 |
| 17. 본인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취득후 타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문제점 | 82 |
| 18. 부동산 이전등기 시 납부해야 할 국내 세금 | 84 |
| 19. 한국내 부동산 보유 시 납부해야 할 국내 세금 | 85 |
| 20.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절차 | 86 |
| 21.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 양도 방법 | 87 |

| | |
|---|---------|
| Ⅲ. 양도소득세 관련 | 89 |
| 22.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 | 91 |
| 23.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93 |
| 24. 한국 양도소득세 세율 | 95 |
| 25. 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97 |
| 26.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98 |
| 27.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00 |
| 28. 영주권자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102 |
| 29. 이민 온 이후에 취득한 국내 주택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 103 |
| 30. 한국에 돌아가서 거주하는 경우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04 |
| 31. 고가주택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계산 | 105 |
| 32. 국내 2주택 보유 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 106 |
| 33. 국내 3주택 이상 보유 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 107 |
| 34. 상속·결혼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 108 |
| 35.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109 |
| 36. 재개발 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110 |
| 37. 비거주자의 상가, 대지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 111 |
| 38. 비거주자의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 112 |
| 39.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및 협의매수된 부동산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 113 |
| 40.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의 한국 세금부담 차이 | 114 |
| 41. 부부 등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양도소득세 경감 | 115 |
| Ⅳ. 상속세 관련 | 117 |
| 42. 한국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방법 | 119 |
| 43. 상속재산의 재분할 시 국내 과세 | 120 |
| 44. 영주권자의 상속재산 국내 등기 | 121 |
| 45. 영주권자의 해외에서 상속재산 국내 등기방법 | 122 |

| | |
|--|-----|
| 46. 사망 후 상당기간 경과 후 국내 상속등기 | 123 |
| 47.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국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방법 | 124 |
| 48. 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 | 125 |
| 49. 한국의 상속세 계산 | 126 |
| 50. 한국의 상속세 세율 | 127 |
| 51. 한국의 상속세 신고납부 | 128 |
| 52. 한국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과세 | 129 |
| 53. 한국의 상속공제의 종류와 내용 | 130 |
| 54. 한국의 경우 증여와 상속의 세부담 비교 | 131 |
| 55. 한국에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 132 |
| 56. 실질적으로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가액 기준 | 134 |

V. 증여세 관련

| | |
|---|-----|
| 57.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 | 137 |
| 58. 한국의 증여재산의 범위 | 139 |
| 59. 친인척에게 양도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할 경우 한국의 증여세 과세 여부 | 141 |
| 60. 한국의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은? | 142 |
| 61. 한국의 증여세 비과세 | 143 |
| 62. 증여재산을 반환할 경우 한국의 증여세 과세 여부 | 144 |
| 63. 한국의 증여세 계산 | 145 |
| 64. 한국의 증여세 세율 | 146 |
| 65. 한국의 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 147 |
| 66. 한국의 증여세 신고납부 | 148 |

VI.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 | |
|---------------------------|-----|
| 67. 재외국민의 신고의무 | 151 |
| 68.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153 |

| | |
|---|-----|
| VII.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 155 |
| 69. 해외현지법인 파견임직원의 한국 거주자여부 | 157 |
| 70.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의미 | 158 |
| 71. 거주자 판정의 개정사유(183일) | 159 |
| 72.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경우 거주자여부 | 159 |
| 73. 한국 및 태국 양쪽 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결정기준 | 160 |
| 74. 이중 거주지국 결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사례 | 161 |
| | |
| VIII. 이전가격 개념 | 163 |
| 75.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65 |
| 76.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서 타결까지 소요기간 | 167 |
| 77.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할 때 수수료여부 | 167 |
| | |
| IX. 일반세무안내 | 169 |
| 78. 한국에서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171 |
| 79. 한국에서 신고한 본인의 세무신고 등 조회 및 경정청구 방법 | 174 |
| 80. 역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 176 |
| 81. 국내 법령정보 검색 방법 | 179 |
| 82. 한국의 세무서 및 담당구역 안내 | 180 |
| | |
| X. 태국 세무 | 189 |

2016년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National Tax Service

제1장 한국의 과세제도

| | |
|--|----|
| I.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 3 |
| II.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 19 |
| III.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 27 |
| IV.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37 |
| V.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 43 |
| VI. 이전가격 개념 | 51 |

제 1 장 | 2016
한국의 과세제도 |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I .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NTS



I.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과세된다. 이때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교환, 수용, 공매,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자는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관련 주식 포함) 등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금융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2016. 1.1.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파생상품(KOSPI200선물·옵션 과 국외파생상품)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10%('16.2.17.개정, 5%) 세율로 과세하도록 추가되었다

〈 대주주의 범위 〉

| 구 분 | 상장 주식(코스피) | 코스닥코넥스 주식,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벤처기업 주식 |
|---------|---------------|---------------------------------------|
| 지분을 기준 | 2%(1%) 이상 | 4%(2%) 이상 |
| 시가총액 기준 | 50억원(25억원) 이상 | 40억원(20억원) 이상(코넥스 : 10억원) |

* ()속 내용은 '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2.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94조와 제118조의2에 열거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 포함)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는 국내외 소재 자산 모두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구체적인 거주자 판정방법은 Q23 참고)

3.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 등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조건(①과 ② 모두 충족하는 것)

- ①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 ②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가. 구분계산

양도소득금액(차익, 차손)은 양도자산을 먼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식’과 ‘주식 외 자산’으로 구분하여 4가지 종류 자산별로 통산하여 계산한다.

나. 양도차익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다만 불분명한 경우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다만, 불분명한 경우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하나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감정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다만, 주식은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 취득가액의 구분 |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산정 |
|------------------------------------|--|
|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로 산입되었거나 산입될 감가상각비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용 |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 취득당시(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예 : 등기된 부동산은 3%)을 곱한 금액 |
| 2011. 1. 1. 이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 아래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공제 ①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을 곱한 금액 ②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 등 + 양도비 등 |

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양도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최고 30% 또는 80%)을 곱하여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국외 소재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 이상으로서 중과대상인 주택의 경우 2011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2.1.1.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아래 표 참조)은 일반부동산에 대한 것과, 과세대상인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것이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공제율(최고 8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부동산에 대한 공제율(최고 30%)을 적용한다(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한편,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공제율(최고 80%) 적용하지 않았으나, 예규 변경에 따라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 보유기간 | 양도자산 유형별 공제율 | |
|--------------|--------------|----------------|
| | 일반부동산 | 과세대상인 1세대의 1주택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100분의 80 |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을 먼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식’과 ‘주식 외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씩을 공제하므로 거주자는 연간 최고 1,000만원을, 비거주자는 연간 최고 500만원(비거주자는 국내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되므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 2014.1.1.이후 양도분 >

<자산별 세율체계>

| 자산구분 | 국내자산 양도소득 | | 국외자산 양도소득 |
|-------------------|--|---|---|
| | 2013년까지 | 2014년 이후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1년미만 보유 : 50% · 1년~2년 미만 보유 : 40% | < 1년미만 보유 > · 토지 : 50% · 주택(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포함) : 40% | - 6~38% 누진세율 |
| | | < 1년~2년 미만 보유 > · 토지 : 40% · 주택(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포함) : 6~38% 누진세율 | |
| | · 2년이상 보유 : 6~38% 누진세율 | | |
|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
| 기타자산 | 6~38% 누진세율 | | 6~38% 누진세율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중소기업 : 10%(대주주는 20%)* - 대기업 : 20% -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 | - 중소기업 : 10% ('07.1.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이외 : 20% |

*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16.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

<참고> 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를 폐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되, 지정지역내 3주택이상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6~38%)에 10%를 가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누진세율(6~38%)에 10%를 가산한 세율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큰 세액을 적용한다. 또한,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소법§104, 2015.1.1. 양도분부터 개정)

② 비사업용토지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소법 §104① 제8호 및 제9호)은 2015년말까지는 6~38%의 세율을 적용하고(지정지역은 10%p 추가과세하고, 2년미만 보유의 경우 단기증과세를 적용), 2016년부터 모든지역에 동일하게 누진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적용한다.(소법§104①제8호 및 제9호, 법 부칙 제20조, 2015.1.1.양도분부터 개정)

※ 누진세율

| 2009. 1. 1.~2009. 12. 31. 양도분 | | | 2010. 1. 1. ~ 2011. 12. 31. 양도분 | | 2012. 1. 1. 이후 양도분 | | 2014. 1. 1. 이후 양도분 | |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0 | 6% | 0 | 6% | 0 | 1,200만원 이하 | 6% | 0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120만원 | 15% | 108만원 | 15% | 108만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534만원 | 24% | 522만원 | 24% | 522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14만원 | 35% | 1,490만원 | 35% | 1,490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초과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부칙{소득세법(법률 제11146호)} 제2조 제2항 | | | | 38% | 2,3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 주식 양도시 적용 세율

| 구 분 | | | 세율(%) |
|--------|----------------------|-----------|-------|
| 대주주*1) | 중소기업 주식*주2) | | 20 |
| | 그 외 주식 | 1년이상 보유주식 | 20 |
| | | 1년미만 보유주식 | 30 |
| 기타주주 | 상장주식(장내거래) | | 비과세 |
| | 비상장주식 및 장외양도 상장주식 | 중소기업 주식 | 10 |
| | | 그 외 주식 | 20 |

* 주1) 대주주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 지분을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 지분을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 지분을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주2) 중소기업의 판정

2012.2.2.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여부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일 현재 기업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였다. 2012.2.1.이전에는 중소기업의 판정을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판정하여 오다가 201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판정하게 되었다.

< 2013.12.31. 까지 양도분 >

참고 1 1세대 2주택 이상 세율

| 1. 2004.1.1 ~ 2008.12.31. 양도* | | | | |
|-------------------------------|------|------|------|-----|
| 구 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 고 |
| 3주택 | 60% | 60% | 60% | |
| 2주택 | 50% | 50% | 50% | |

- * 1세대 3주택 : '04.1.1.~'08.12.31.
-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06.1.1.~'08.12.31.
- * 1세대 2주택 : '07.1.1.~'08.12.31.
-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07.1.1.~'08.12.31.

| 2. 2009.1.1 ~ 2009.3.15. 양도 | | | | |
|-----------------------------|------|------|------|-----|
| 구 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 고 |
| 3주택 | 45% | 45% | 50% | |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 3. 2009.3.16 ~ 2013.12.31. 양도한 경우 | | | | |
|-----------------------------------|--------|----------|-------|------|
| 구 분 | 소재지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 3주택 | 지정지역*1 | 누진세율+10% | 40%*2 | 50% |
| | 기타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 2주택 | 모든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 * 1 : '09.3.16.~'12.5.14. 양도분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강남서초송파구에 소재하는 주택
- * 2 : 40% → 20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 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 * 지정지역 : '12.5.15. 이후 주택 지정지역 없음

참고2 비사업용 토지 세율

| 1. 2007.1.1. ~ 2009.3.15. 양도 | | | | |
|------------------------------|------|------|------|-----|
| 보유기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 고 |
| 세 율 | 60% | 60% | 60% | |

| 2. 2009.3.16 ~ 2013.12.31. 양도 | | | | |
|-------------------------------|------|----------|-------------------|------|
| 보유기간 | 소재지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 세 율 | 지정지역 | 누진세율+10% | 40%* ¹ | 50% |
| | 기타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 1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 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 지정지역 : 2013.2. 현재 토지 지정지역 없음

참고3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세율

| 양도시기 | 2007.1.1.~2009.3.15. 양도 | 2009.3.16.~2013.12.31. 양도 |
|------|-------------------------|---------------------------|
| 세율 | 60% | 누진세율 |

5. 신고납부

가. 예정신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예 : 2014.3.20.)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예 : 2014.5.31.)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예 : 2014.4.20.)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예 : 2014.8.31.)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자산 중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12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납부제도가 폐지되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기간(통상 매년 1. 1 부터 12. 31)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예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거주자는 통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국내 원천소득발생 장소, 예: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6.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가. 대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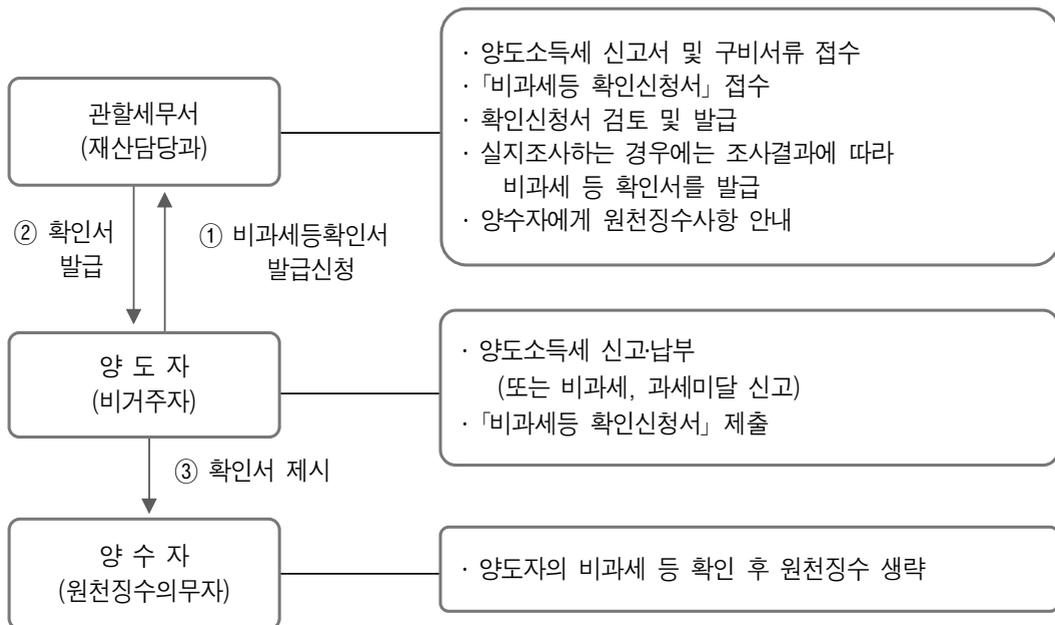
상장주식인 경우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25% 미만 보유하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양도가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매매대금의 지급자인 취득자)이다. 다만, 양도시기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비과세·과세미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이 때 양도자인 비거주자가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로 신고하고 「비과세 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절차 흐름도 >



다만,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가액(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 양도자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양수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에게 부과·징수한다.

한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비거주자인 양도자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인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자(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양수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예정(확정)신고 세액을 계산한다.

7. 재외국민 인감경유제도

가. 의의

한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재외국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말함)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데 있다.



나. 인감경유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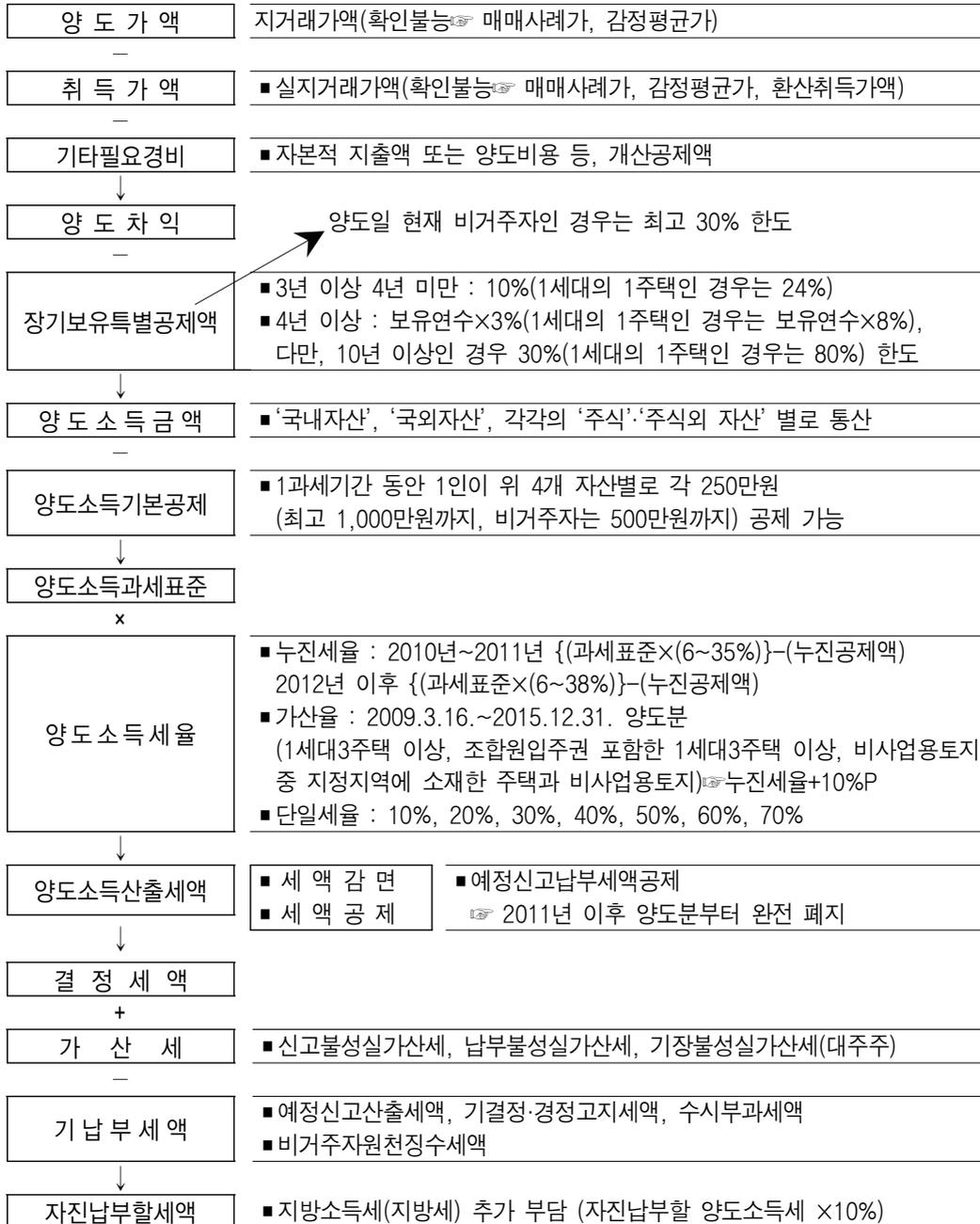
인감경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거주자(재외국민 :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부동산을 매도(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 할 때이다.

다. 인감증명서 경유 관할 및 절차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경유하여야 할 세무서는 소관증명청(읍·면·동사무소) 관할 세무서 또는 양도부동산 물건지 관할 세무서를 비롯한 전국 세무서 중 한 곳을 재외국민이 선택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소관증명청 관할 세무서장 또는 양도부동산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제1장 | 2016
한국의 과세제도 |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II.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NTS

II.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 피상속인 | 과 세 대 상 |
|------|-------------------------------------|
| 거주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 비거주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한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한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영주귀국의 신고 및 영주귀국 확인서의 발급 필요(「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비거주자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순자산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채무)에서 본인이 납부한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상속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민법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다. 아들과 손자의 경우 아들이 선순위이고, 아들과 딸의 경우 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1·2순위인 직계비속·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가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자 등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

나. 수유자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로서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거주자)이 소유한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과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액이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등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상당을 말하며,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로 뺀다.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 사망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 ▣ 국내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공과금을 공제하며, 국내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채무는 공제하지만,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 ▣ 상속공제의 경우 2억원의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가 공제되지만, 기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세율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5.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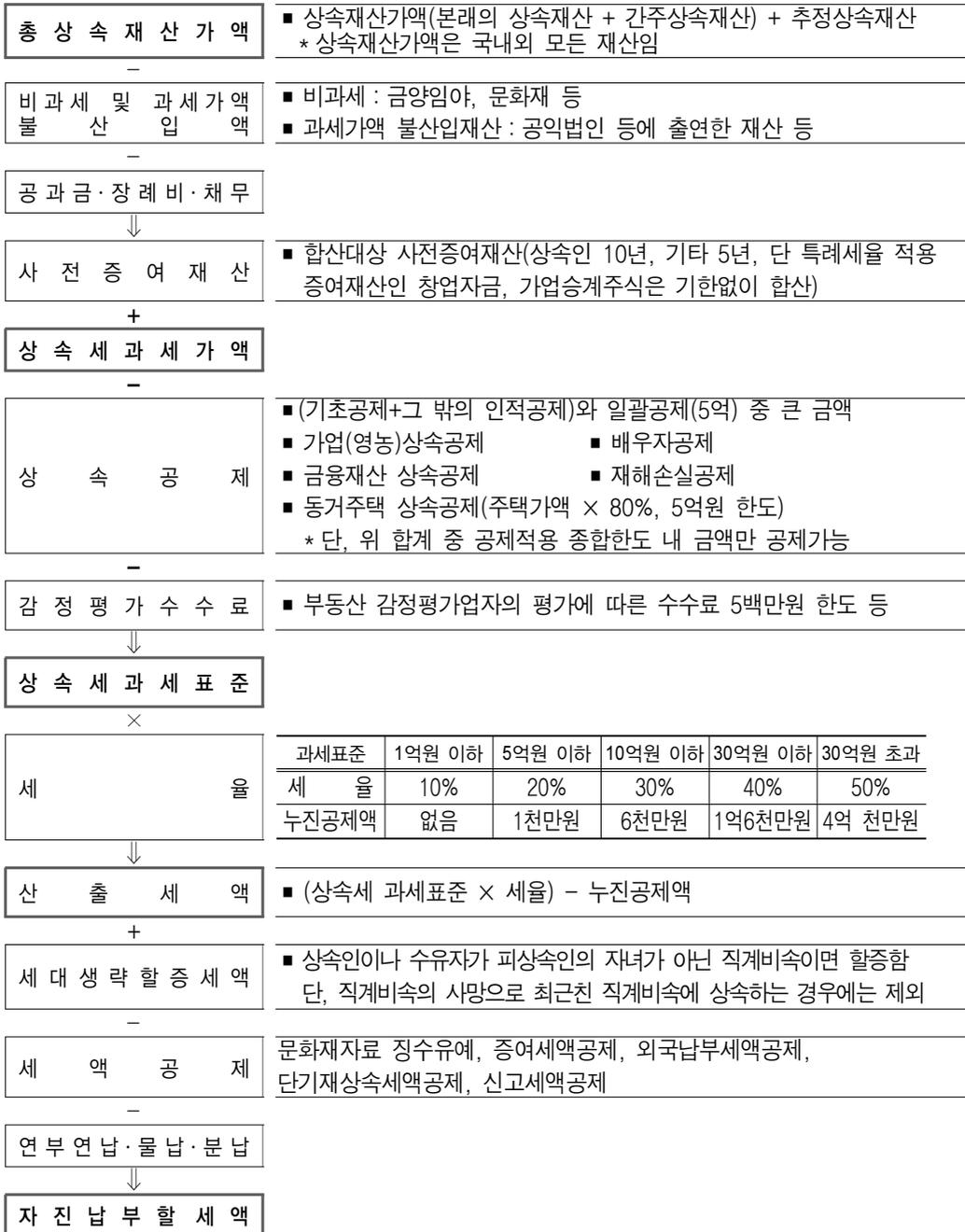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단,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은 제외)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 차이】

| 구 분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
| ①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 |
| ② 과세대상 재산 |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 국내 소재 상속재산 |
| ③ 공제금액 | | |
| · 공과금 | 미납된 모든 공과금 | 국내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
| · 장례비용 | 공제 | 공제 안됨 |
| · 채무 | 모든 채무 공제 (증여채무 제외) | 국내 상속재산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증여채무 제외) |
| ④ 과세표준의 계산 | | |
| · 기초공제(2억) | 공제 | 공제 |
| · 그 밖의 인적공제 | 공제 | 공제 안됨 |
| · 일괄공제(5억) | 공제 | 공제 안됨 |
| · 배우자상속공제 | 공제 | 공제 안됨 |
| · 금융재산상속공제 | 공제 | 공제 안됨 |
| · 재해손실공제 | 공제 | 공제 안됨 |
|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공제 | 공제 안됨 |
| · 감정평가수수료 | 공제 | 공제 |

〈참고 : 상속세 계산 흐름도〉

피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 비거주자인 경우

| 총 상속 재산 가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가액(국내소재 상속재산 + 국내소재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과금·채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담보채무는 공제 사망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전증여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기타 5년, 단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없이 합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과세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2억원 ■ 공제적용 한도액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수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 5백만원 한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과세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율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font-size: small;">과세표준</th> <th style="font-size: small;">1억원 이하</th> <th style="font-size: small;">5억원 이하</th> <th style="font-size: small;">10억원 이하</th> <th style="font-size: small;">30억원 이하</th> <th style="font-size: small;">30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 small;">세율</td> <td>10%</td> <td>20%</td> <td>30%</td> <td>40%</td> <td>50%</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누진공제액</td> <td>없음</td> <td>1천만원</td> <td>6천만원</td> <td>1억6천만원</td> <td>4억 천만원</td> </tr> </tbody> </table> |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 천만원 |
|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 | | | | | | | | | | | |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 | | | | | | | | | | |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 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세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합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상속하는 경우에는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부연납·물납·분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진납부할세액 | | | | | | | | | | | | | | | | | | | |

Ⅲ.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Ⅲ.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타인(법인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증여받은 재산)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 및 특정 국외소재재산(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특정 국외소재재산’이란 비거주자가 2013.1.1. 이후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을 말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재산을 해외로 유출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
 - ① 신탁이익, 보험금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3, 34)
 - ②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
 - ③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6)
 - ④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7)
 - ⑤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8, 39, 39의 2)
 - ⑥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의3)
 - ⑦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 ⑧ 초과배당,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3)
 - ⑨ 금전무상대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4,5)
 - ⑩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42)
 - ⑪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의2)
 - ⑫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의3)
5. 증여추정 재산
 - 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경우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7. 증여의제 재산
 -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2)
 - ②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
 - ③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가치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4)
 - ④ 특수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5)
8. 민법상 증여 및 증여의제재산은 아니나 증여로 취급하는 재산
 - ①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상속인간 몫의 변동 시 증여 취급
 - ②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에 따른 증여 취급

2.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가.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등의 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여기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채무부담액 공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단, 해당 채무액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승계시킨 당해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각각의 증여 당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아래의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구분 | | 증여시기 | '08.1.1. 이후 | '14.1.1. 이후 | '16.1.1. 이후 |
|-------------|------|------|-------------------------|----------------------|----------------------|
| 증 여 자 | 직계존속 | |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 | 직계비속 | | 3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 배우자 | | 6억원 | 6억원 | 6억원 |
| | 기타친족 | | 5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함(비거주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세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상속세와 세율이 같음)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일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과세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아 가산한 증여재산 관련 증여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한다.

4.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수증자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일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평가관련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한다(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비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설

2015.1.1.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증여자의 거주지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증여자가 국내에서 증여세 납부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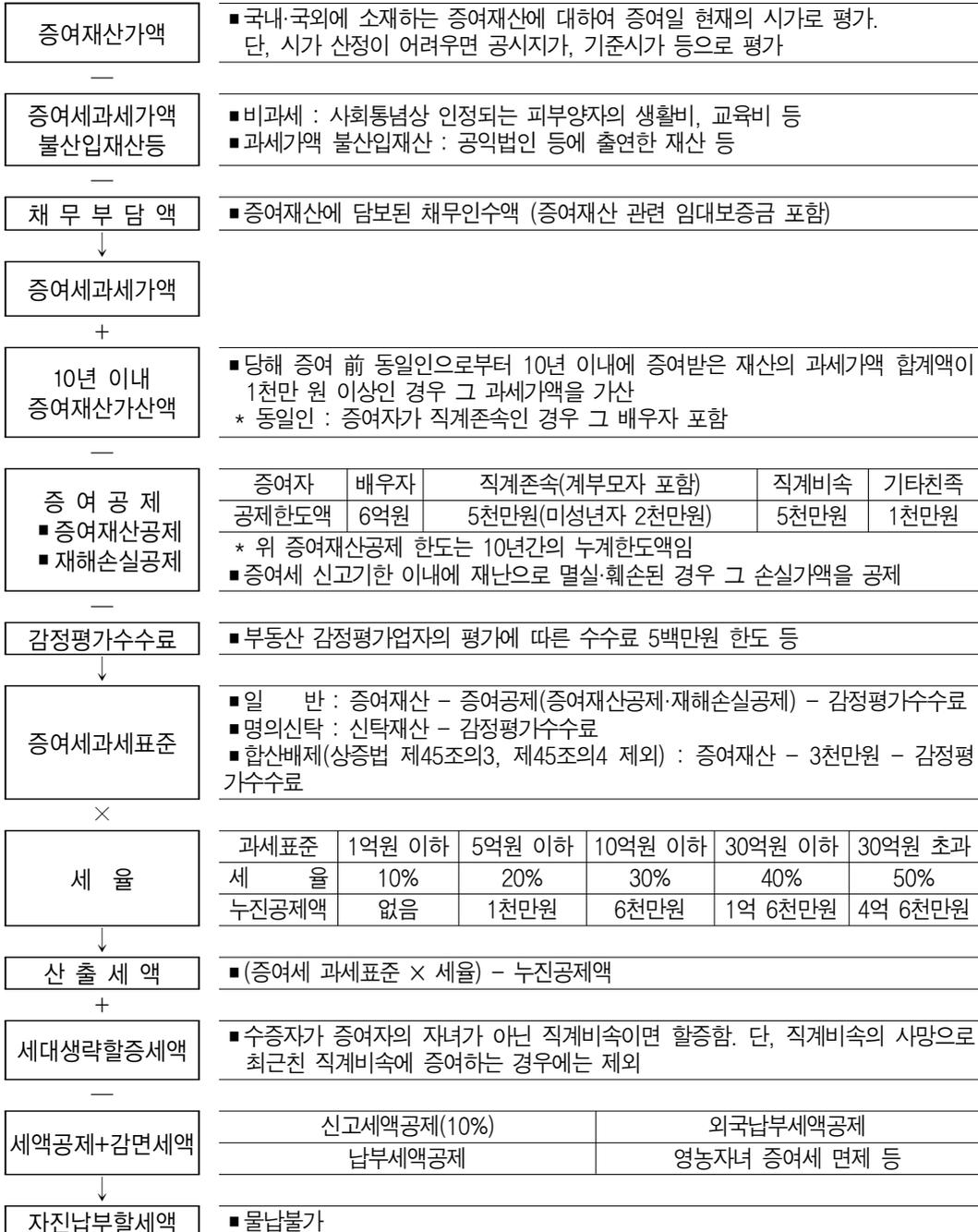
6. 신고납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원칙적으로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 : 증여세 계산 흐름도〉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증여재산가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받은 국내소재 재산 및 특정국외소재 재산에 대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 무 부 담 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여세과세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증여 前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여 공 제 ■ 재해손실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음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수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5백만원 한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여세과세표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반 : 증여재산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율 | <table border="1"> <tr> <td>과세표준</td> <td>1억원 이하</td> <td>5억원 이하</td> <td>10억원 이하</td> <td>30억원 이하</td> <td>30억원 초과</td> </tr> <tr> <td>세 율</td> <td>10%</td> <td>20%</td> <td>30%</td> <td>40%</td> <td>50%</td> </tr> <tr> <td>누진공제액</td> <td>없음</td> <td>1천만원</td> <td>6천만원</td> <td>1억 6천만원</td> <td>4억 6천만원</td> </tr> </table> |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 | | | | | | | | | | | | |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 | | | | | | | | | | | |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 출 세 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10%), 납부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진납부할세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납불가 | | | | | | | | | | | | | | | | | | |

-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특정 국외소재재산’이란 2013.1.1. 이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을 말함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국외재산 수증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71, §30의5, §30의6)를 적용하지 않음

IV.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IV.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 2015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2016년 6월에 신고를 해야 함

2. 신고의무자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도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3. 신고의무면제자

신고의무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②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 ④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4. 신고대상범위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은행업무, 해외증권거래, 해외파생상품거래,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은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 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말한다.

5.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원에 관한 정보(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 ②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 ③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6.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7.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을 받는다.

- ①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②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및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
- ③ (형사처분)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V.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V.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National Tax Service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소득법 §1의2①).

2.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가.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령 §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득령 §2②).

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소득령 §2③).

-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소득령 §2④)

라. 외국 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주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소득령 §2⑤).

마.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소득령 §3).

* “해외현지법인”이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소득령 § 2의2①)

-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②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소득령 § 2의2②)

-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②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거주기간의 계산

가. 일반적인 거주기간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소득령 §4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소득령 §4③).

나.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의 일시적 출국기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령 §4②).

다.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기간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단기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입국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령 §4④, 소득칙 §2).

〈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사유와 입증방법 〉

| 입국 사유 | 입증 방법 |
|-------------|---|
| 단기 관광 |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질병 치료 | 「의료법(§17)」 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
| 병역의무 이행 |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 상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
| 친족 경조사 등 기타 |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가.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즉,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득법 3§①).

여기서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국제세원-588, 2009.11.30).

나.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 제119조 |
|----------------|------------|
| 이자소득 | 1호 |
| 배당소득 | 2호 |
| 부동산소득 | 3호 |
|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4호 |
| 사업소득 | 5호 |
| 인적용역소득 | 6호 |
| 근로소득 | 7호 |
| 퇴직소득 | 8호 |
| 연금소득 | 8호의2 |
|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 9호 |
| 사용료소득 | 10호 |
| 유기증권양도소득 | 11호 |
| 기타소득 | 12호 |

6.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가. 거주에 대한 과세방법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하고, 퇴직소득금액과 토지·건물등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한다(소득법 §14).

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다만, 퇴직소득과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소득법 §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요약 〉

|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 |
|----------------------|--------------------|---|--|----------------------------|
| 1호 | 이 자 소 득 |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채권이자:14%) |
| 2호 | 배 당 소 득 | | | 20% |
| 3호 | 부 동 산 소 득 | | | - |
| 4호 | 선박등임대소득 | | | 2% |
| 5호 | 사 업 소 득 | | | 2% |
| 10호 | 사 용 료 소 득 | | | 20% |
| 11호 |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 | |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 12호 | 기 타 소 득 | | | 20% |
| 7호 | 근 로 소 득 | | | 거주자와 동일 |
| 8호의2 | 연 금 소 득 | | | |
| 6호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 | 20% |
| 8호 | 퇴 직 소 득 |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 | 거주자와 동일 |
| 9호 | 양 도 소 득 |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9호는 제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소법§121 ④)
3.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4.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예외 : 소득세법 제156조의4·5(원천징수절차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5.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는(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6.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7.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7호, 제10호~제12호 합산) 가능(소법§121⑤)

제1장 | 2016
한국의 과세제도 |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VI. 이전가격 개념

NTS

Ⅵ. 이전가격 개념



1. 이전가격 개념

가. 개념

이전가격(Transfer Price, 대체가격, 내부가격)은 동일 계열 기업그룹 내 산하 기업간의 원재료·제품 및 서비스 수수시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은 원래 한 기업 내에서 사업부(Division)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 가격(Intra-company price)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기업 간에 재화나 용역의 수수가격인 기업 간 가격(Inter-company price)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전가격은 국내기업에서 동일 기업 내의 사업부 간, 본·지점 간 또는 국내 특수관계기업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국내이전가격(Domestic transfer price)과 국경을 넘어 해외의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국제이전가격(International transfer price)이 있다. 이전가격은 정상적인 상업상의 관행에 따라 시장가격수준이 적용되기도 하나, 계열기업그룹의 이익 관리 및 회계방침에 따라 공개시장가격과는 다른 조작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전가격의 조정은 국내 관련기업 간에도 나타나는 것이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의 인위적 조작이다. 따라서 국제조세 목적상 이전가격의 조정(Transfer pricing)이란 하나의 기업이 국경을 달리 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시 당해 기업그룹 전체로서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격 또는 비용의 부담을 조작함으로써 특수관계기업 간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은 고세율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므로 다국적기업의 소재지국(주로 선진국)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신고소득이 부당

하게 낮은 경우 이를 독립기업 간 거래가격(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재산정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

-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정상가격의 개념(ALP, Arm's Length Price)

국조법(제2조1항10호)에서는 정상가격을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며, 이전가격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정상가격이다.

정상가격은 가격(Price)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Profi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다.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 "원가가산법(CPM, Cost Plus Method)",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율방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그리고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있다.(국조법 제5조)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국조법 제5조1항1호)

② 재판매가격방법(RP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국조법 제5조1항2호)

③ 원가가산방법(CP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국조법 제5조1항3호)

④ 이익분할방법(PS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 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국조법 제5조1항4호)

⑤ 거래순이익율방법(TNM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율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국조법 제5조1항5호). 거래순이익율이란 아래와 같다.

-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4.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국조법 제2조 1항 5호)

〈절 차〉

| | |
|-----------|---|
| ① 신청 | 납세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 접수 |
| ② 개시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한 날이나, 체약상대국에 개시요청을 한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에 개시 |
| ③ 심사 및 분석 | 과세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 자료 수집 등 |
| ④ 협상 준비 | 예상 쟁점 검토 |
| ⑤ 협상 | 서면 또는 대면회의 |
| ⑥ 종결 | 합의 결과를 납세자, 기획재정부, 과세당국 등에 통보 |
| ⑦ 사후처리 | 합의 내용의 이행 확인 |

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국조법 제6조 1항)

| | |
|-----------|---|
| ① 사전상담 | 신청전 사전상담 |
| ② 신청 | 납세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 접수 |
| ③ 개시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한 날이나, 체약상대국에 개시요청을 한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에 개시 |
| ④ 심사 및 분석 | 과세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 자료 수집 등 |
| ⑤ 협상 준비 | 예상 쟁점 검토 |
| ⑥ 협상 | 서면 또는 대면회의 |
| ⑦ 종결 | 합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개월내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최종 승인 |
| ⑧ 사후처리 | 합의 내용의 이행 확인(연례보고서) |

제2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FAQ)

| | |
|--|-----|
| I. 금융자산 투자 관련 | 61 |
| II. 부동산 투자 관련 | 71 |
| III. 양도소득세 관련 | 89 |
| IV. 상속세 관련 | 117 |
| V. 증여세 관련 | 135 |
| VI.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 149 |
| VII.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 155 |
| VIII. 이전가격 개념 | 163 |
| IX. 일반세무 안내 | 169 |

제2장 | 2016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I. 금융자산 투자 관련

I. 금융자산 투자 관련

01

Question

국내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
-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관련법령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02

Question

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 소액으로 쪼개거나 또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

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 받을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한다.

아울러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②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미화 \$10,000 또는 원화 2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③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10,000 또는 원화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 류 | 국세청 통보기한 |
|--|-------------------|
|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시 년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년간 \$50,000 초과 해외예금 송금 년간 \$100,000 초과 유학경비(체재비) 송금 | 전산망에 의하여 자동 통보 |
| 거주자의 \$10,000 초과 휴대 출국 | 다음달 10일 |
| 해외 직접 투자 | 다음달 25일 |
| 해외 신용카드 연간 \$50,000 (통화인출 포함) 초과 사용자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 \$20,000 초과자 | 다음해 2월 20일 |
| 해외 유학생, 체재자 등의 체재비, 여행경비, 신용카드 실적의 합계액이 \$100,000 초과자 | 다음해 3월말 |

신고의무 이하의 금액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나, 거래외국환은행에 송금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03

Question

국내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내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국의 내국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한국내에서 사용할 자금을 편의상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간주되어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이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비거주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의 친인척 등의 은행구좌로 송금한 후 그 자금을 송금한 자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으나, 송금한 금전을 은행구좌 명의자가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송금한 자금을 은행구좌 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위험 부담이 크므로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04

Question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내의 친인척(예: 부모,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i) 거래사유서, (ii) 금전대차계약서, (iii) 대주(빌려주는 사람) 및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재외동포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제4항

05

Question

영주권자가 국내의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

영주권자가 국내의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면 된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등록이 면제된다. 또한 내국민대우외국인(국내에 있는 영업소,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도 투자등록이 면제된다. 즉, 이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혹은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주식취득은 물론 투자금액, 투자비용 변경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비거주자의 증권취득)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금융투자업 규정 제6-10조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 (외국인투자절차)

06

Question

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금액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함에 있어서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예시 :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당초 투자시의 송금서류 등)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동 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처분에 따른 해외 송금 가능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또한 본인 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지급)
- ▶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07

Question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국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
-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투자할 때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서류(예 : 국내로 송금한 증빙, 계좌를 개설할 때 신고서류 등)를 금융기관에 함께 제시하여야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편리하다. 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등의 합계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08

Question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가?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된다는데, 그 기준은?

현행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요 신고의무 및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국세청 통보기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 시 ○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 연간 \$50,000 초과 해외예금 송금 ○ 연간 \$100,000 초과 유학경비(체재비) 송금 | 전산망에 의하여 자동 통보 |
| ○ 거주자의 1만 달러 초과 휴대출국 | 다음 달 10일 |
| ○ 해외직접투자 | 다음 달 25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용카드 연간 \$10,000(통화인출 포함) 초과 사용자 ○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 \$10,000 초과자 | 다음 해 2월20일 |
| ○ 해외 유학생, 체재자 등의 체재비, 여행경비, 신용카드 실적의 합계액이 \$100,000 초과자 | 다음 해 3월말 |

신고의무 이하의 금액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나, 거래 외국환은행에 송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법령

-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거주자의 지급 등 절차 예외)
-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 ▶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신용카드 등에 대한 보고)

제2장 | 2016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II. 부동산 투자 관련

NTS

II. 부동산 투자 관련

09

Question

영주권자가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국내의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는가? 특별한 절차
(예 : 신고, 허가 등)를 거쳐야 하는가?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제한이 있다.



관련법령

-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4조, 9조

10

Question

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①등기신청서, 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등록등본, ⑦인감증명, ⑧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영주권자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을 구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주민등록등본 :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주민등록번호 :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영주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 (3) 인감증명 : 영주권자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012.12.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인감증명서와 선택 사용 가능

- 의 의 :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발급절차 : ①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읍·면·동장)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관련법령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동산 거래 등) 제1항,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제3항
-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신고 등),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11

Question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사무를 위임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①등기신청서, 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등록등본, ⑦인감증명서(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⑧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며, 국내에 가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관련법령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등기예규 제1282호)

12

Question

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서류나 번호가 필요하다.

(1)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주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동산 거래 등) 제1항,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13

Question

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인감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이 연서로 보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에 인감이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면 국내에 본인이 가지 않고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증명서)

14

Question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15

Question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는 무엇이고, 신고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 또한 신고된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된다.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rtms.moct.go.kr>) 또는 부동산실거래가 고객센터 안내 (1588-0149)로 문의 가능하다.

관련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16

Question

국내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통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2)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함)
- (3) 영리법인(본점)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점의 등기에 관한서류, 정관사본,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 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17

Question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자가 친인척 등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그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과징금, 강제이행금 및 벌칙이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및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을 면제한다.

(1) 과징금 : 과징금 부과 당시 부동산 평가액 × (㉠과 ㉡의 부과율 합계치)

| ㉠ 부동산 평가액 기준에 의한부과율 | | ㉡ 의무기간 경과기준에 의한 부과율 | |
|---------------------|-----|---------------------|-----|
| 5억 원 이하 | 5% | 1년 이하 | 5% |
|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0% | 1년 초과 2년 이하 | 10% |
| 30억 원 초과 | 15% | 2년 초과 | 15% |

(2) 이행강제금 : 과징금 부과 후 일정기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이행금 부과

- 1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로 환원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가액 10%
- 2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로 환원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가액 20%

(3) 벌칙 :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명의신탁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한편, 친인척 등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재판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제6조(강제이행금), 제7조(벌칙)

18

Question

본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토지, 건물 등 일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세율 : 표준세율 (적용시기 : 2011. 1. 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다만, 별장·골프장·고급주택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인 2% × 4)}, 과밀억제권역내의 취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인 2% × 2)}

☞ 적용시기 : 2011. 1. 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취득유형별 취득세 표준세율

-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 3.0%, 기타 부동산 4.0%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3.5%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 2.3%, 기타 부동산 2.8%
-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 4.0%
- 공유물·합유물 및 충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2.3%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3조(등록면허세)

19
Question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

| 구분 | 재산세(지방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
|--------|---|--|
| 과세대상 | - 주택 - 토지 | - 주택 - 토지(종합, 별도합산) |
| 납세의무자 |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중 주택 : 6억원 초과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초과자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초과자 |
| 과세권자 | -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 과세방법 | - 주택(부속토지) : 물건별 통합과세 - 토지 : 관내합산과세(과세대상 유형별 구분) | - 인별·유형별 전국합산 과세 |
| 과세표준 | - 주택 : 공시가격×60% - 토지(종합, 별도) : 공시가격×70% | - 주택 : (공시가격 - 6억원*)×80% * 1세대 1주택 9억원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 5억원)×80% -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 80억원)×80% |
| 세율 | - 주택, 토지(종합, 별도) : 3~4단계 누진세율 - 토지(분리과세) : 단일세율 | - 주택 : 5단계 누진세율 - 토지(종합, 별도) : 3단계 누진세율 |
| 납부기한 | - 주택 : 7.16~7.31(50%) 9.16~9.30(50%) - 토지 : 9.16~9.30 - 기타 : 7.16~7.31 | - 12.1~12.15 |
| 징수방법 | - 보통징수(부과징수) | - 부과징수 - 선택적 신고납부 가능 |
| 세부담상한액 | -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 (주택 105~130%) | - 직전연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

20

Question

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교부하여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교부받은 것), 주민등록등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 등이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영주권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의 경우 국내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영주권자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21

Question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권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매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교부받은 것), 주민등록등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 등이 있으며, 동 서류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대리인에게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등기예규 제1282호)

제2장 | 2016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Ⅲ. 양도소득세 관련

Ⅲ. 양도소득세 관련

22

Question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국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내의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비거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부동산 거래관리과-150, 2012.3.9).

* 영주귀국의 신고 및 영주귀국 확인서의 발급 필요(「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한국)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면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말함)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

한국세법상 한국 거주자에게는 한국내에서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 각종 혜택도 함께 부여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비거주자는 2010년 이후 양도분 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납세의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23
Question

한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아래 도표 참조)을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부동산, 주식 등 일정한 국외자산(예 : 미국 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라 함은 국적·성별·나이 및 외국시민권자·외국영주권자·한국국적자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현재 국내(韓國)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자(個人)를 말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個人)를 말한다.

| 자산구분 | 자산유형별 종류 |
|--------------|--|
| 부동산 | · 토지·건물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국외 자산은 등기여부와 무관) |
|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 · 대주주가 양도하는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법인의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KOSDAQ)·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 등 · 소액주주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코넥스 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
| 주권비상장 법인의 주식 | · 증권시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주식 등 |



| 자산구분 | 자산유형별 종류 |
|-------|------------------------|
| 기타 자산 |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 | ·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
| | · 특정주식 등 |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 대주주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 : 1% 이상 보유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 : 2% 이상 보유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 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 : 4% 이상 보유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대주주 판정기준은 2013.2.15. 개정(코넥스 시장은 2013.6.28. 신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24
Question

**한국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높은 세율로 증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38%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2009. 1. 1. ~ 2009. 12. 31. 양도분 | | | 2010. 1. 1. ~ 2011. 12. 31. 양도분 | | 2012. 1. 1. 이후 양도분 | | 2014. 1. 1. 이후 양도분 | |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0 | 6% | 0 | 6% | 0 | 1,200만원 이하 | 6% | 0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120만원 | 15% | 108만원 | 15% | 108만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534만원 | 24% | 522만원 | 24% | 522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14만원 | 35% | 1,490만원 | 35% | 1,490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초과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 | 38% | 2,3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가장 복잡한 구조의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택의 수, 자산의 종류, 토지의 이용 상황, 보유기간, 등기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은, 2013년까지 최고 과표구간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38%로 과세하던 것을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여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2014.1.1.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미만의 단기보유 부동산 중 주택(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포함)과 토지를 구분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변동없이 40%, 50%로 과세하며, 다만 주택(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포함만)은 1년미만 보유시 40%, 1년이상 보유시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한편,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누진세율로 과세하되, 투기 지정지역내 3주택 이상자에게는 누진세율에 10%p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비사업용토지도 중과제도를 유예(장특공제는 여전히 배제)하되, 2015년에는 누진세율(지정지역은 10%p추가)로 과세하며 2016년부터는 모든 지역에 누진세율에 10%p를 추가과세 하도록 하였다.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율(10~22%)에 30%p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2014.1.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율에 10%p 추가 과세 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다만, 법인세율에 10%p 추가 과세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2015년까지 10%p 추가과세를 하지 않고 2016년 이후 양도분부터 10%p 추가 과세 하도록 하였다.(구체적인 세율은 제1장 I,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참조)

♣ 2013.2. 현재 지정지역 없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25

Question

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1. 1.~12.31.)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외 자산’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한다.

먼저,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2007. 1.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와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기타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 등 보유기간 중 실제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이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와 건물이며, 자세한 내용은 FAQ 28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 ☞ 거주자인 경우 “국내주식·국내주식외 자산·국외주식·국외주식외 자산”에 대하여
-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주식·국내주식외 자산”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1과세기간에 거주자는 최고 1,000만원을, 비거주자는 최고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등 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26

Question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 소득세는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양도일(예 : 2015.4.2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 : 2015.6.30.)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이 양도가액의 10%와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양수자로부터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신고·납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비과세·과세제외·과세미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양도소득 확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양수자(취득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출하면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증빙서류(예 :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기관(국내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 제110조(확정신고)

27

Question

한국에서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비거주자도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1세대 1주택인 경우 24%~80%)를 공제한다.

다만, 2010년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하지 않고 10%~30%공제율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 공제율(24%~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비거주자일 때 보유한 기간도 포함함)

한편,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공제율(최고 80%)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예규 변경에 따라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2009년말 이전에 한국 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고 일반 공제율(10%~30%)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불복청구 중인 경우와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 양도분의 경우(2009년 양도분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은 2015년 5월 31일까지임)경정청구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015.1.1.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혁 〉

| 연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비고 |
|----------------------|---|------|
| '07.1.1.~'07.12.31. | 3~4년:10%, 5~9년:15%, 10~14년:30%, 15년이상:45% | |
| '08.1.1.~'08.3.20. | 3년 이상 10% ~ 15년 이상 45% | 연 3% |
| '08.3.21.~'08.12.31. | 3년 이상 12% ~ 20년 이상 80% | 연 4% |
| '09.1.1. 이후 | 3년 이상 24% ~ 10년 이상 80% | 연 8% |

한편, 1세대 2주택 이상으로서 다주택 중과 대상인 경우 2011년말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12년부터는 다주택 중과 대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다.

|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 | |
|--------------|------------------------|------------------|
| | 1세대 1주택 외, 비거주자 | 1세대 1주택(거주자만 적용) |
|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 양도차익의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12 | 양도차익의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 양도차익의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18 | 양도차익의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21 | 양도차익의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24 | 양도차익의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0분의 27 | 양도차익의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 양도차익의 100분의 80 |

* 특례 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예 : 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
-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항 단서
-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28

Question

이민 올 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 1채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6.28. 이전 양도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1세대 1주택의 범위)
-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항 단서

29
Question

이민 온 이후에 국내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혜택은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6.28. 이전 양도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따라서 이민 온 이후에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국내 소재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동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출국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비거주자가 한국내의 미분양주택을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 향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1세대 1주택의 범위)
-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항 단서
-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98조의6 등

30

Question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거나,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국내소재 1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함으로써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서 위의 보유기간(2년 이상인지 여부)의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1세대인 부부가 한국에 귀국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이 3년이상 거소를 둔 상태에서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1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되고 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동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1세대인 부부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남편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직업을 가진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동 주택을 양도한다면, 국내에 직업을 가지게 된 날에 거주자가 되고 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한국 내 거주기간(최소 183일이상 거주), 한국에 직업이 있는지 여부, 다른 가족의 거주지 및 재산보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1세대 1주택의 범위), 제8항 제2호

31
Question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9억원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적용될 과세대상 양도차익 | = | 전체 양도차익 | × | $\frac{\text{양도가액} - 9\text{억원}}{\text{양도가액}}$ |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적용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위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등기된 3년 이상 보유주택에 한정하여 24%~8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비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국내에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출국일(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며,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위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된다. 한편,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32

Question

한국 내에 주택이 2채인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2채를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부담이 적은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아래 표에 해당되는 2주택(국내 소재)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대상인 때에는 중과세율(최고 50%,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별 적용 세율이 다름에 유의, 자세한 세율은 관련 법령을 참조)을 적용한다. 중과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제율은 10%~30%가 적용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 중과 관련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 구분 | '08.10.6. 이전 양도분 | '08.10.7. 이후 양도분 |
|-----|--|--|
| 소재지 | - 서울 - 모든 광역시(군지역 제외)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모든 주택》 | - 서울 -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모든 주택》 |
| | - 모든 광역시의 군지역 - 경기도 읍·면지역 - 기타 도지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 지방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 인천광역시 군지역 - 경기도 읍·면지역 - 기타 도지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09.3.16.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거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5%, 2012년 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미등기양도는 70%)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와 제6항, [개정전,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33
Question

한국 내에 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3채 이상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부담이 적은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아래 표에 해당되는 3주택(국내 소재)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대상인 때에는 중과세율(최고 60%,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별 적용 세율이 다름에 유의, 자세한 세율은 관련 법령을 참조)을 적용한다. 중과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제율은 10%~30%가 적용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관련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 소 재 지 |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
|---|----------------------|
| - 서울 - 모든 광역시(군지역 제외)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 - 모든 광역시의 군지역 - 경기도 읍·면지역 - 기타 도지역 |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예 따라 한시적으로 2009.3.16.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거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5%, 2012년 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미등기양도는 70%)을 적용한다.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므로 양도 소득세 부담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제4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34

Question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결혼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모두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로서 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혼인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 1채(상속주택이 1채인 경우 그 주택, 상속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긴 주택, 거주기간이 긴 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 順으로 순차 적용)를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모두 1주택인 경우로서 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상속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양도소득세의 세율), [개정전,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35

Question

비거주자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신축완성된 취득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중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인 때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실가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승계조합원)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위의 사유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55조 제17항

36

Question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기존부동산의 평가액(예 : 7억원)이 분양예정가(예 : 3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과 청산금(4억원, 일부 양도로 봄)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기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건물(주택) 멸실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비거주자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상건축물이 주택이 아니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이더라도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현금수령분, 2015년말까지는 15%,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청산금(일부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급받은 청산금에 상당하는 양도차익 =

$$\text{관리처분계획인가 前 양도차익} \times \frac{\text{지급받은 청산금}}{\text{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 前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66조 제1항

37

Question

비거주자가 상가, 대지 등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율은?

한국 비거주자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토지(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음.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16~48%)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09.3.16.부터 2015.12.31.까지 양도하거나 2009.3.16.부터 2012.12.31.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5%, 2012년 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을 적용한다. 한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지목, 보유기간, 기간별 토지의 용도, 도시지역 편입 여부, 사업 관련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내역 등)를 확보하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www.hometax.go.kr>)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대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한편,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 또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4조(세율) 제1항 제4항 및 제6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38

Question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감면은 가능한가? 상속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비거주자가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재촌(실제 거주한 경우를 의미, 임야는 주민등록 요건 충족) 및 자경(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을 위한 노동력의 50%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한 경우를 의미)하지 아니하거나 토지를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 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16~48%)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피상속인(또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포함)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인(양도자)이 양도할 때까지의 재촌 및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최고 1억원(5년간 : 최고 3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2006.2.9. 이후 사망한 경우)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는 이 경우에 해당)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1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39

Question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한국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물(양도일 현재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이 공익사업용으로 2018.12.31.까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서 일정한 조건(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채권 보상분 15%, 3년이상 만기 특약 채권보상분 30%, 5년 이상 만기 특약채권 보상분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2015.12.31.이전 양도시 : 현금보상분(15%), 채권보상분(20%), 만기채권보상분(40%, 50%)

다만, 감면세액은 1개 과세기간 또는 5개 과세기간별로 감면한도액이 있으며,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감면 규정을 양도자가 선택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한도, 감면요건,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익사업용 수용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 1과세기간 동안 1억원 한도로 하되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15%와 20% 감면분은 2억원 한도. 30%와 40% 감면분은 3억원을 한도로 감면규정 적용함.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감면의 종합한도)

40

Question

국내에 있는 부모가 국내 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부모가 주택을 먼저 증여하고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와 세금 차이는 없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수증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송금한 부모(증여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당해 주택의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비거주자이므로 항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2009.1.1 이후 증여받은 당해 주택을 증여등 기점수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모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을 증여 받으면서 자녀가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어느 경우에 세금부담이 적은지는 구체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하여야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부모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적다.



관련법령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41

Question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6년 5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 과세표준 2억)하는 경우 세금을 5,660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 시 공동명의(각각 1/2 지분으로 과세표준 1억원)로 하면 세금이 4,020만원(1인당 2,010만원) 정도가 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55조(세율),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제2장 | 2016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IV. 상속세 관련

IV. 상속세 관련

42

Question

한국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법정 분배비율과 다르게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법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시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본국 법률이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법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예 :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아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공동상속(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는 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가 된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배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관련법령

- ▶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제9조 제1항
-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112조(유류분)

43

Question

상속재산을 분배한 후에 다시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비율을 달리하여 조정하는 경우 국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협의분할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되지만(민법 제1013조), 각 상속분이 1차 확정(부동산 등기, 주식의 명의개서 등)된 후 협의분할을 이유로 당초 상속분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이 지분이 증가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 분할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1)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3)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통해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 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44

Question

국내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영주권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5) 토지·건축물대장
- (6)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 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있었던 영주권자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 ▶ 외국인토지법 제5조(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45

Question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5) 토지·건축물대장
- (6)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 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위임장

위임장에는 위임자(영주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등기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위임장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위임장에 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령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46

Question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는데, 지금 국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상속 포기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녀(상속권자)는 부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상속인 앞으로 등기할 것이 요구된다.

사망하기 전(상속개시 전)에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마치 부모가 생전에 처분한 것처럼 등기원인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건취득)
- ▶ 외국인토지법 제5조(계약외의 토지취득 신고)

47

Question

한국은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채무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생기게 되고 그 상속인들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나중에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활용하여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일 수 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41조(포기의 방식)

48

Question

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受遺者)는 부과되는 상속세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비율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 :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과거 증여재산 과세표준 + 순수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순수 상속재산 가액/전체 순수 상속재산 가액)) ÷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과거 증여된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국내에住所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49

Question

한국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우선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채무,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 상속세 과세표준 =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 및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가액 - 피상속인이 변제할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 +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 중 용도불분명 금액 - 상속공제액(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상속에 따른 30%(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한다.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내지 제30조

50

Question

한국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구체적인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의 사례와 같다.

| 과세표준(사례) | 산출세액의 계산 |
|----------|---------------------------------------|
| 9천만원 | 9천만원 × 10% = 9백만원 |
| 3억원 | 3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5천만원 |
| 8억원 | 8억원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천만원 |
| 20억원 | 20억원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6억 4천만원 |
| 100억원 | 100억원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45억 4천만원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51

Question

한국 상속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및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무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요(가액이 가장 큰) 상속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상속세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있다.

- (1) 분납 :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분납(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 (2) 연부연납 :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연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 (3) 물납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관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70조(자진납부), 제71조(연부연납), 제73조(물납)

52

Question

한국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고 세대를 건너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 세대를 건너서 상속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손자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거나 손자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둔 경우 손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30%(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할증하여 과세하게 된다.

다만,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따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53

Question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은 각종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각종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구 분 | 공 제 금 액 |
|------------|--|
| 기초공제 | · 2억원 |
| 기업·영농상속 공제 | · 기업상속공제 : 기업상속재산의 100%(최대 한도액 5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15억원 한도) |
| 배우자 공제 |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가액(법정지분 및 30억원 한도) · 배우자 최소공제액 : 5억원 공제 |
| 그 밖의 인적공제 | · 자 녀 공 제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원(65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 : 1,000만원 ×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기대여명(期待餘命) |
| 일괄공제 |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중 선택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공제한도 :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천만원에 미달시 2천만원을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할 수 없음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80%(5억원 한도) 공제 |
| 재해손실 공 제 | ·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공제 |

한편,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54
Question

한국은 사망 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에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세금부담이 적은가?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액과 증여재산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많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증여한 때에 증여세를 부담했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확실히 세부담을 비교하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여야 어느 쪽이 세금부담이 적은지 알 수 있다.

〈21억원을 증여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세 부담 비교〉

| 수증자 | 증여 재산 |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 |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 | |
|-----|-------|--------------|--------|--------|---------------|------|--------|
| | | 증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증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배우자 | 11억원 | 6억원 | 5억원 | 9천만원 | - | 11억원 | 2억8천만원 |
| 아들 | 5억원 | 5천만원 | 4억5천만원 | 8천만원 | - | 5억원 | 9천만원 |
| 딸 | 5억원 | 5천만원 | 4억5천만원 | 8천만원 | - | 5억원 | 9천만원 |
| 합 계 | 21억원 | | | 2억5천만원 | - | | 4억6천만원 |

※ 아들.딸은 미성년자 아님

〈21억원을 상속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부담 비교〉

| 상속인 | 상속 재산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 |
|-----|-------|-------------------------------|------|--------|--------------------------------|------|------|
| |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배우자 | 11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액 9억원 자녀의 일괄공제 5억원 | |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가능 | | |
| 아들 | 5억원 | | | | | | |
| 딸 | 5억원 | | | | | | |
| 합 계 | 21억원 | 14억원 | 7억원 | 1억5천만원 | 2억원 | 19억원 | 6억원 |

55

Question

한국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은 국내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핵가족화 심화현상으로 상속인들은 부친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긴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1. 신청자격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 1·2순위 없는 경우, 3순위(형제자매) 신청가능(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2. 신청방법

- 사망신고 할 때 신청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조회내용

1. 금융거래

- 예금보험공사, 은행, 우체국,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원,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 KCB, KED, 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2.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3.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 유무

4.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5.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환급세액

6.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조회결과 확인방법

-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 확인
 - 금융거래, 국민연금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 금융감독원 : www.fss.or.kr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국세(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토지, 지방세, 자동차 :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 중 선택

관련법령

-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8호)

56

Question

일반서민층도 국내 상속세 납부를 신경써야 하는가? 상속가액이 얼마이면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국내거주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만 위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가 가능하다.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등에는 위의 공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장 | 2016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V. 증여세 관련

V. 증여세 관련

57

Question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일반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013.1.1. 이후부터는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특정국외소재재산 즉,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1월 1일부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위 특정국외소재재산 증여시 비거주자에게 증여세 과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자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①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및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위와 같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으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액도 당초의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8

Question

한국의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
 - ① 신탁이익, 보험금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3, 34)
 - ②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35)
 - ③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6)
 - ④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7)
 - ⑤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8, 39, 39의 2)
 - ⑥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9의3)
 - ⑦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0)
 - ⑧ 초과배당,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2,3)
 - ⑨ 금전무상대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4,5)

- ⑩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42)
- ⑪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2의2)
- ⑫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2의3)

5. 증여추정 재산

- 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44)
-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45)

6.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경우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7. 증여의제 재산

-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2)
- ②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3)
- ③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가치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4)
- ④ 특수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

8. 민법상 증여 및 증여의제재산은 아니나 증여로 취급하는 재산

- ①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상속인간 몫의 변동 시 증여 취급
- ②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에 따른 증여 취급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5

59

Question

한국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로부터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대가를 지급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만, 지급한 대가와 시가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와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60

Question

한국의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은?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채무를 상환)한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재산 등으로 취득·상환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금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연령별 또는 재산종류별로 다음의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 구 분 | 취 득 재 산 |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 주택 | 기타재산 | | |
| 1. 세대주인 경우 | | | | |
| 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 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 |
| 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배제기준)

61

Question

한국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1) 불우이웃돕기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
- (2) 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에서 연간 4천만원
-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4)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적인 금품
- (5)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6)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7) 혼수용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용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
- (8) 수증 받아 국외에서 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금품
- (9) 국가유공자의 유적이거나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다만, 생활비, 유학경비 등 학자금, 교육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도 동 금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정기예금에 저축하는 등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62

Question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결과적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없지만,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환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분 또는 반환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할 수 있다.

| 반환(재증여) 기간 | | 처 리 방 법 | |
|----------------|----------------------------------|---------|--------|
| | | 당초 증여 | 반환·재증여 |
| 신고기한 (3월) 내 | 납기전 징수사유로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를 결정한 경우 | 과 세 | 과세 제외 |
| | 증여세를 미결정한 경우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 신고기한 경과 후 |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 | 과 세 | 과세 제외 |
|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 과 세 | 과 세 |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다만, 당초 증여등기에 실질적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어 증여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및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시기에 관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환급한다.

❁ 증여재산 반환시기별 과세방법 예시



- ㉠(3.1~6.30)기간 중 반환시 : 당초 증여분(㉠) 및 반환분(㉠) 과세제외
- ㉡(7.1~9.30)기간 중 반환시 : 당초 증여분(㉠) 과세, 반환분(㉡) 과세제외
- ㉢(10.1~)이후 반환시 : 당초 증여분(㉠) 및 반환분(㉢) 모두 과세함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63
Question

한국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여러 증여자로부터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구분한 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증여한 것을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후, 여기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산출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30% (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할 경우 40%) 할증과세를 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경우에는 종전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납부세액공제한다.

* 증여세 계산사례 : 거주자인 甲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버지와 어머니 및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시점별 부담할 증여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증여일 | 증여자 | 증여 재산 | 합산 대상 | 과세 가액 | 증여 공제 | 과세 표준 | 산출 세액 | 납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
| 08.1.20 | 아버지 | 3억원 | - | 3억원 | 0.3억원 | 2.7억원 | 0.44억원 | - | 0.44억원 |
| 09.2.20 | 어머니 | 5억원 | 3억원 | 8억원 | 0.3억원 | 7.7억원 | 1.71억원 | 0.44억원 | 1.27억원 |
| 10.6.20 | 배우자 | 10억원 | - | 10억원 | 6억원 | 4억원 | 0.7억원 | - | 0.7억원 |
| 11.6.20 | 아버지 | 2억원 | 8억원 | 10억원 | 0.3억원 | 9.7억원 | 2.31억원 | 1.71억원 | 0.6억원 |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종전 증여 당시 증여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공제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5조(증여세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64

Question

한국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구체적인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의 사례와 같다.

| 과세표준(사례) | 산출세액의 계산 |
|----------|---------------------------------------|
| 9천만원 | 9천만원 × 10% = 9백만원 |
| 3억원 | 3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5천만원 |
| 8억원 | 8억원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천만원 |
| 20억원 | 20억원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6억 4천만원 |
| 100억원 | 100억원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45억 4천만원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65

Question

한국은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원
- (2) 직계존속(2010.1.1 이후 증여분부터 계부모자간 증여도 동일하게 적용)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천만원. 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천만원
- (4)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1천만원
 - * 혈족 :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으로 구분된다.
 - * 인척 :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등이다.
- (5) 타인(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없음
 - (관련 회신)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연대납부의무 등(재산세과-534, 2011.11.11)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66

Question

한국 증여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하다.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가 또는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다.

-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단, 수증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거소지 관할 세무서
-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한 경우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3)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증여세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연부연납이 있다.

- (1) 분납 :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분납(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부연납세액은 분납을 할 수 없다.
- (2) 연부연납 :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연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관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70조(자진납부), 제71조(연부연납)

VI.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VI.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67

Question

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는가?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여기에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③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⑤
-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68

Question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
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해외금융
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가 해당된다.

따라서 질문의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보험계좌 및 파생상품계좌 모두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
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VII.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Ⅶ.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69

Question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가 되는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70

Question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국내에 거주자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여기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한국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대법원2013두16876, 2014.11.27.).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두8171, 2010.9.30.).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183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한국과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2013두16876, 2014.11.27.).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3항

71

Question

'15년 한국 소득세법 개정 당시 거주자 판정 1년 기준을 183일 기준으로 개정한 이유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 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72

Question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국내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4두6869, 2014.8.2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제1항,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

73

Question

한국 및 태국 양쪽 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결정기준은?

한국과 태국 간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국 모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관련법령

▶ 한국-태국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74

Question

이중 거주지국 결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사례

사실 관계

원고는 '03.10월 사우디에 사우디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이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는 각각 연평균 188일 및 327일이다.

원고는 '90년 이후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갑법인을 설립하여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를 신고하였고, 동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하였다.

원고는 서울에 주택 및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상가를 소유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사우디에 소재한 사우디법인의 사내 숙소에 거주하고, 사우디법인에 대한 주식외에 사우디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다.

원고는 사우디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사우디 현지 교민회 부회장 및 교민 장학회 장학위원을 맡고 있다.

사우디법인은 사우디 지역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우디법인이 체결한 주요 하도급 계약은 원고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 체결되었다.

원고는 사우디법인의 유일한登記이사이고, '08.4월 이전까지는 100% 지분을 보유하였고, '08.4월 이후부터는 80%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나머지 20%는 원고의 아들이 보유), 사우디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없이 단독으로 하였다.

원고는 사우디법인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대부분을 한국의 원고 계좌 및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자녀 명의의 보험료 등 금융상품가입 및 생활비 등으로 관리·사용하였다.

사우디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사우디법인이 진행중인 사업의 상대방으로 한국 기업인 등이 소개되어 있다.



대법원 판단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평균 188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사우디 내에는 유형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반면 국내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국내에서도 사우디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사우디 소득세법상 사우디의 거주자인 이른바 ‘이중거주자’로서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에 모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사우디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훨씬 긴 점, 원고와 그 배우자의 주요재산이 국내에 있을 뿐 아니라 사우디법인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 국내 생활관계에 사용한 점, 사우디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대한민국 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법인이고, 사우디 법인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6두37584, 2016.8.17.).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 한국-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VIII. 이전가격 개념

VIII. 이전가격 개념

75

Question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 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2.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 방법
 -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5. 제7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 6.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 7.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76

Question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서 타결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납세자의 거래조건, 납세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Annual Report 2015에 따르면 개시부터 종결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7

Question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할 때 수수료가 있나요?**

한국 국세청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 미국의 경우 납세자의 매출액 및 거래관계 등에 따라 최대 \$60,000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장 | 2016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IX. 일반세무 안내

IX. 일반세무 안내

78

Question

영주권자가 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의 종류별로 다음장 표에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이 추가로 필요하다.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내용을 공증하는 행위를 말함

본인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재외공관장이 공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임자의 신분증(신분증 사본포함), 전화통화 등으로 위임의사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한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개 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 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대조할 것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5.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7.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8.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 영리내국 법인(본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4.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5. 현금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6.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9.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외투법인인 경우) <p>※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4항</p> |

| 구분 | 제출서류 |
|-------------------|--|
|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3.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5.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p>※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4항</p> |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3. 정관사본 4.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 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6. 임차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8.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9.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10.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p>※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8조</p> |

79

Question

영주권자가 한국에 양도소득세 등을 과다신고하여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본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서 등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예를들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0.5.31이 법정신고기한 이므로 5년에 해당하는 2015.5.31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서와 함께 계좌개설 신고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계좌개설 신고서의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계좌이어야 하며, 거래은행은 한국은행과 국고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은행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에 있는 은행과 국고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이나 해외은행 국내지점 등은 해당이 없다.(예: 우리은행 뉴욕지점, HSBC 한국지점 등은 안됨)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부동산양도계약서 등)는 관할세무서에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재외국민등록증, 여권 등) 확인 후 사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재외공관장이 공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한 후 신고서 사본 등을 제공한다.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경정 등의 청구)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정보 제공)

80

Question

한국에서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 발생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5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 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61조(청구기간), 제68조(청구기간)

81

Question

국내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은 어떻게 하는가? 세금에 관한 법령정보 및 일반 법령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납세자의 세법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 전화 상담 : 한국국가번호(82), 국내전화 126번으로 전화한 후 1번을 누른 다음 음성안내멘트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상담관과 연결되어 상담을 할 수 있다.
- (2) 인터넷 상담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하여 「상담/제보」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48시간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다.
- (3) 방문 상담 : 납세자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상담관으로부터 1대1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주소 : (우: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서호동 1514번지)

국내 세금에 관한 법령 정보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docs/main.jsp)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세무관련 법령과 예규, 심사·심판 결정례, 판례, 훈령, 고시, 서식 등 국세관련 정보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다.

일반 법령에 관한 정보는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각종 법령, 최근 입법현황, 법령 해석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다.

82

Question

전국 세무서 연락처 및 담당구역 안내

서울지방국세청(26)

| 세무서 명칭 | 전화번호 | 관 할 구 역 |
|--------|--------------|--|
| 종로세무서 | 82-760-9200 | 종로구 전역(87개동) |
| 중부세무서 | 82-2260-9200 | 광희동 1,2가, 남대문로 2가, 남산동 1,2,3가, 남학동, 명동 1,2가, 무학동, 묵정동, 방산동, 신당1동~6동, 쌍림동, 예관동, 예장동, 오장동, 을지로 6,7가, 인현동 1,2가, 장충동 1,2가, 주자동, 초동, 충무로 1,2,3,4,5가, 필동 1,2,3가, 황학동, 흥인동. |
| 남대문세무서 | 82-2260-0200 | 소공동남창동(남대문시장)북창동 회현동1-3가봉래동1,2가 남대문로1,3,4,5가 태평로1,2가 저동1,2가을지로1-5가 삼각동수하동장교동산림동다동 무교동 수표동 주교동 정동서소문동 의주로1,2가 순화동만리동1,2가 중림동 총정로1가 |
| 용산세무서 | 82-748-8200 | 용산구 전체 |
| 성북세무서 | 82-760-8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서대문세무서 | 82-2287-4200 | 서대문구, 은평구 전체 |
| 마포세무서 | 82-705-7200 | 마포구 전역(행정동 24개) |
| 영등포세무서 | 82-2630-9200 | 영등포구(신길동, 도림동, 대림동 제외) |
| 강서세무서 | 82-2630-4200 | 강서구 전체 |
| 양천세무서 | 82-2650-9200 | 양천구 전체 |
| 구로세무서 | 82-2630-7200 | 구로구 전체(신도림동등 19개동) |
| 동작세무서 | 82-840-920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체, 영등포구 중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 |

| 세무서 명칭 | 전화번호 | 관할 구역 |
|--------|--------------|--|
| 금천세무서 | 82-850-4200 | 금천구 전체 |
| 관악세무서 | 82-2173-4200 | 관악구 전체 |
| 강남세무서 | 82-519-4200 | 강남구 중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 |
| 삼성세무서 | 82-3011-72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
| 서초세무서 | 82-3011-6200 | 서초구 서초동, 양재동, 우면동, 원지동, 염곡동, 신원동, 내곡동 |
| 역삼세무서 | 82-3011-8200 |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
| 반포세무서 | 82-590-4200 | 서초구 방배동, 반포동, 잠원동 |
| 성동세무서 | 82-460-4200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광진구 전체 |
| 동대문세무서 | 82-958-0200 | 동대문구, 중랑구 전체 |
| 도봉세무서 | 82-9440-200 | 강북구, 도봉구 창동 제외 |
| 강동세무서 | 82-2224-0200 | 강동구 전역 |
| 송파세무서 | 82-2224-9200 | 서울시 송파구 중 거여, 문정, 장지, 마천, 송파, 가락, 석촌 |
| 노원세무서 | 82-3499-020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지역, 도봉구 중 창동 |
| 잠실세무서 | 82-2055-9200 | 잠실, 신천, 삼전, 방이, 오륜, 오금, 풍납동 |

중부지방국세청(33)

| 세무서 명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인천세무서 | 82-32-770-0200 |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남구, 옹진군 |
| 북인천세무서 | 82-32-540-62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
| 서인천세무서 | 82-32-560-5200 | 인천광역시 서구 ·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
| 남인천세무서 | 82-32-460-5200 |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
| 부천세무서 | 82-32-320-5200 | 경기도 부천시 |
| 안양세무서 | 82-31-467-1200 |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
| 동안양세무서 | 82-31-389-8200 |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
| 안산세무서 | 82-31-412-3200 | 안산시 |
| 수원세무서 | 82-31-250-4200 |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
| 동수원세무서 | 82-31-695-4200 | 수원시 영통구, 화성시 일부(동탄면, 기안동, 배양동, 반송동, 반월동, 석우동, 능동, 병점동, 기산동, 반정동, 진안동, 송산동, 안녕동, 황계동), 오산시 |
| 평택세무서 | 82-31-650-0200 |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
| 성남세무서 | 82-31-730-6200 | 성남시 중 수정구, 중원구 |
| 이천세무서 | 82-31-644-0200 |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 의정부세무서 | 82-31-870-4200 |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
| 포천세무서 | 82-31-538-7200 |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
| 남양주세무서 | 82-31-550-3200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 고양세무서 | 82-31-900-9200 | 고양시 |

| 세무서 명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파주세무서 | 82-31-9560-200 | 경기도 파주시 전역 |
| 시흥세무서 | 82-31-310-7200 | 경기도 시흥시 |
| 용인세무서 | 82-31-329-2200 | 용인시 전지역 |
| 화성세무서 | 82-31-8019-1200 | 화성시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1,2동, 동탄 1,2,3동, 동탄면 제외) |
| 분당세무서 | 82-31-219-9200 | 성남시 분당구 |
| 춘천세무서 | 82-33-2500-200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
| 홍천세무서 | 82-33-432-7911 |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
| 원주세무서 | 82-33-740-9200 |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중 봉평면, 대화면, 방림면 |
| 영월세무서 | 82-33-370-0200 |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임계면 제외), 평창군 중 평창읍, 미탄면 관할 |
| 삼척세무서 | 82-33-570-0200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태백지서 관할) |
| 강릉세무서 | 82-33-610-9200 | 강릉시. 평창군중 대관령면,진부면,용평면 및 정선군 중 임계면 |
| 속초세무서 | 82-33-639-9200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 경기광주세무서 | 82-31-880-9200 | 광주시, 하남시 |
| 김포세무서 | 82-31-980-3200 | 김포시, 인천시 강화군 |
| 동고양세무서 | 82-31-900-6200 | 고양시 덕양구 |
| 광명세무서 | 82-2610-8200 | 광명시 |

대전지방국세청(16)

| 세무서 명칭 | 연락처 | 관 할 구 역 |
|--------|----------------|------------------------|
| 대전세무서 | 82-42-229-8200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충청남도 금산군 |
| 서대전세무서 | 82-42-480-8200 | 대전광역시 서구 |
| 청주세무서 | 82-43-230-9200 |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진천군 |
| 동청주세무서 | 82-43-229-4200 | 청주시 상당구, 청원구, 증평군, 괴산군 |
| 영동세무서 | 82-43-740-6200 |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
| 충주세무서 | 82-43-841-6200 | 충주시, 음성군 |
| 제천세무서 | 82-43-649-2200 | 제천시, 단양군 |
| 공주세무서 | 82-41-850-3200 | 충청남도 공주시 , 세종특별자치시 |
| 논산세무서 | 82-41-730-8200 | 충청남도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
| 보령세무서 | 82-41-930-9200 |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
| 서산세무서 | 82-41-660-9200 |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
| 홍성세무서 | 82-41-630-4200 | 홍성군, 청양군 |
| 예산세무서 | 82-41-330-5200 | 예산군, 당진시 |
| 천안세무서 | 82-41-559-8200 | 충청남도 천안시 |
| 아산세무서 | 82-41-536-7200 | 충청남도 아산시 |
| 북대전세무서 | 82-42-603-8200 | 대덕구, 유성구 |

광주지방국세청(14)

| 세무서 명칭 | 연락처 | 관할구역 |
|--------|----------------|--|
| 광주세무서 | 82-62-605-0200 |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전남 화순군, 곡성군 |
| 북광주세무서 | 82-62-5209-200 | 광주광역시 북구, 장성군, 담양군 전체 |
| 서광주세무서 | 82-62-380-5200 | 광주광역시 서구,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 |
| 군산세무서 | 82-63-470-3200 | 군산시 |
| 전주세무서 | 82-63-250-0200 |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
| 북전주세무서 | 82-63-249-1200 | 전주시 덕진구,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일부 (천천, 계남, 계북, 장계면) |
| 익산세무서 | 82-63-840-0200 | 익산시, 김제시 |
| 정읍세무서 | 82-63-530-1200 |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 남원세무서 | 82-63-620-2500 |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일부(장수읍, 산서, 번암) |
| 목포세무서 | 82-61-241-1200 |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중 삼호읍 |
| 나주세무서 | 82-61-330-0200 | 나주시, 영암군(삼호면 제외), 함평군 |
| 해남세무서 | 82-61-530-6200 |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
| 순천세무서 | 82-61-720-0200 |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
| 여수세무서 | 82-61-688-0200 | 여주시 |

대구지방국세청(13)

| 세무서 명칭 | 연락처 | 관 할 구 역 |
|--------|----------------|---|
| 동대구세무서 | 82-53-749-0200 | 대구광역시 동구 , 수성구 전체 |
| 서대구세무서 | 82-53-659-1200 | 대구광역시 서구 전체, 경상북도 고령군 전체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감삼동, 두류동, 본리동, 성당동, 신당동, 용산동, 이곡동, 장기동, 장동, 죽전동, 파산동, 파호동, 호림동 |
| 남대구세무서 | 82-53-659-0200 | 대구광역시, 남구, 달성군, 달서구(월성동, 대천동, 월암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송현동, 본동) |
| 북대구세무서 | 82-53-350-4200 |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
| 경산세무서 | 82-53-819-3200 | 경산시, 청도군 |
| 경주세무서 | 82-54-779-1200 | 경주시, 영천시 전체 |
| 포항세무서 | 82-54-245-2200 | 포항시, 울릉군 |
| 영덕세무서 | 82-54-730-2200 | 영덕군, 울진군 |
| 안동세무서 | 82-54-851-0200 |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
| 김천세무서 | 82-54-420-3200 | 김천시, 성주군 |
| 구미세무서 | 82-54-468-4200 |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
| 상주세무서 | 82-54-530-0200 |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
| 영주세무서 | 82-54-639-5200 | 경북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전지역 |

부산지방국세청(16)

| 세무서 명칭 | 연락처 | 관할구역 |
|--------|----------------|---|
| 중부산세무서 | 82-51-240-0200 | 중 구 : 광복동, 남포동, 대창동, 대청동, 동광동, 보수동, 부평동, 신창동, 영주동, 중앙동, 창선동 영도구 : 남항동, 대교동, 동삼동, 대평동, 봉래동, 신선동, 영선동, 청학동 |
| 서부산세무서 | 82-51-250-6200 |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
| 부산진세무서 | 82-51-461-92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구 |
| 수영세무서 | 82-51-620-9200 | 남구전체, 수영구전체, 해운대구전체 |
| 북부산세무서 | 82-51-310-620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구, 사상구 |
| 동래세무서 | 82-51-860-2200 | 부산광역시중 동래구, 연제구 |
| 금정세무서 | 82-51-580-620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경상남도 양산시 |
| 울산세무서 | 82-52-259-0200 |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중 동울산세무서 제외 |
| 동울산세무서 | 82-52-219-9200 |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중 언양읍, 범서읍 상북, 삼남, 삼동 두동 두서면 |
| 마산세무서 | 82-55-240-0200 |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
| 창원세무서 | 82-55-239-0200 |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진해구 |
| 김해세무서 | 82-55-320-6200 |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전체 |
| 거창세무서 | 82-55-940-0200 |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 통영세무서 | 82-55-640-7200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 진주세무서 | 82-55-751-0200 |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전체 |
| 제주세무서 | 82-64-720-5200 | 제주도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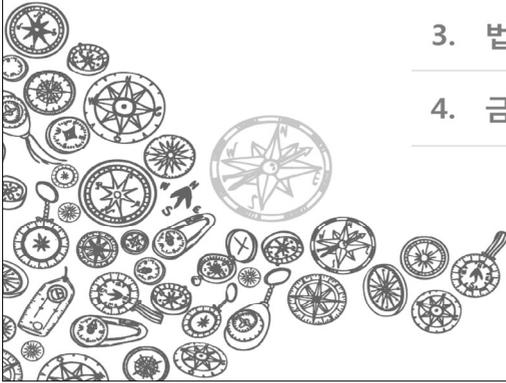
제2장 | 2016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X. 태국 세무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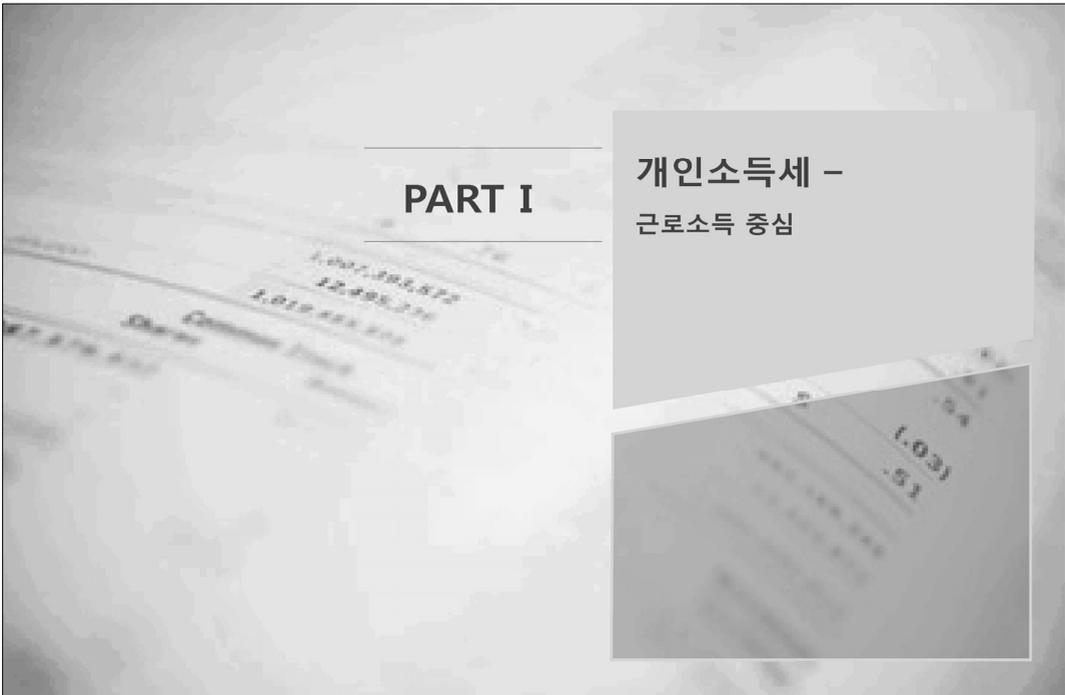
목 차

1. 개인소득세 문제
2. 부동산 관련 세금
3. 법인세 개요
4. 금융제도



PART I

개인소득세 - 근로소득 중심





1. 개인소득세

태국 개인소득세 개요

1. 과세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
2. 납세의무자 : 자연인, 비법인 사업체, 비법인 파트너십(비등록 일반 파트너십), 사망한 해 과세수입 및 재산보유 사망자, 사망자의 비분할 재산 등 5개로 분류
3. 과세기준 : 모든 과세 수입에서 지출 및 비용을 공제한 후 결정
4. 과세대상 납세자
 - 1) 거주자 : 태국에서 연간 180일 이상을 거주한 개인이며, 과세 기준은 태국에서 거주하면서 획득한 모든 수입과 태국내로 송금된 소득도 포함된다.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
 - 2)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자로 태국 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

1. 개인소득세

태국 개인소득세 개요

5. 소득별 표준 공제율

| 내국세 코드 | 소득 종류 | 표준 공제 세율 |
|------------|-----------------------------|---------------------------------|
| 40(1), (2) | 고용 및 서비스 소득 | 40%, 최대 6만 바트 초과 |
| 40(3) | 저작권 소득 | 40%, 최대 6만 바트 초과 |
| 40(4) | 자산매각에 따른 자본, 이자, 배당소득 | - |
| 40(5) | 임대소득(건물, 농지, 기타 토지, 차량, 기타) | 자산임대 형태에 따라 10%~30% |
| 40(6) | 전문인 소득 | 의료행위 60%, 기타 30% |
| 40(7) | 계약에 따른 소득 | 실비 혹은 70% |
| 40(8) | 기타 사업 활동에 따른 소득 | 실비 혹은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65%에서 85%까지 |

1. 개인소득세

태국 개인소득세 개요

6. 세율

| 과세대상연간소득 | 세율 | 과세액(바트) | 누진세액(바트) |
|---------------------|----|---------|----------|
| 1~150,000 | 0 | 0 | 0 |
| 150,000~300,000 | 5 | 7,500 | 7,500 |
| 300,000~500,000 | 10 | 20,000 | 27,500 |
| 500,000~750,000 | 15 | 37,500 | 65,000 |
| 750,000~1,000,000 | 20 | 50,000 | 115,000 |
| 1,000,000~2,000,000 | 25 | 250,000 | 365,000 |
| 2,000,000~4,000,000 | 30 | 600,000 | 965,000 |
| 4,000,000 이상 | 35 | | |

1. 개인소득세

한국 근로소득세 개요

1. 근로소득

-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는 것이면 급료, 상여, 임금, 수당 등 명칭여하 또는 지급방법(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포함)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이 된다.(주택구입자금 저리 및 무상대여, 각종수당,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사택제공)

2. 비과세 근로소득

- 학자금,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가운전보조금, 승선수당, 취재수당, 일숙직료, 특수직종의 작업복, 천재지변으로 인한 급여, 식비 10만원이하, 6세이하 자녀 보육료 10만원



1. 개인소득세

한국 근로소득세 개요

3. 총급여소득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 ~ 70%까지 공제
5.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소득 - 근로소득공제
6.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공적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그 밖의 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등 공제)
7.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공제
8.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 ~ 38%)
9.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10.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

1. 개인소득세

태국 근로소득세 개요

1. 근로소득 : 급여, 임금, 일당, 상여, 장려금, 선물, 연금, 임대소득, 고용주가 제공하는 무상 주택의 현금가치, 피고용인이 직급하여야 할 의무를 고용주가 지불한 경우의 금액 또는 용역 고용으로부터 발행하는 모든 현금, 자산, 이익 형태를 근로소득으로 과세가능소득에 포함한다. - 세법 규정
2.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42조) : 제한적인 범위 내의 소득은 과세가능 소득에서 특별히 제외된다. 제외되는 소득에는 규정된 요건과 최대한도 이내의 태국 소재 은행 저축이나 고정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사업상 여행경비의 환급, 사업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에서 얻는 소득이 아닌 자산소득, 가족생계비, 상속, 유증, 증여 및 장학금을 포함

1. 개인소득세

태국 근로소득세 개요

3.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6만바트 한도내에서 개인소득세의 40%가 비용으로 간주되어 표준공제 된다.
4. 인적공제
 - 1) 납세자와 배우자 : 3만바트
 - 2) 전일교육을 받고 부모의 보호를 받는 25세이하의 자녀 또는 양자녀(최대 3자녀 한도) : 1인당 15천바트
 - 3) 부모 부양 공제 : 3만바트(각자)
5. 각종공제 : 생명보험료, 준비기금 납부, 주거목적 차입금에 대한 이자, 교육비, 자선기부에 대한 공제 가능,

1. 개인소득세

거주자 판정 부분

1. 거주자 여부에 따른 납세의무(한국과 동일)
 - 1) 거주자인 경우 :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함
 - 2) 비거주자인 경우 : 태국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2. 거주자 판정 기준
 - 1) 태국 : 해당 과세연도 누적 체류일자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2) 한국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한다.
3. 한국기업에 파견 나온 직원들의 경우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4. 다음에서는 태국에 파견온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1. 개인소득세

복리후생비 성격의 급여 해당 여부

1.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파견나온 주재원들에게는 파견수당, 주택수당, 자녀의 국제학교 교육비, 차량수당 등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당의 경우 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주택 수당
 - 1)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 금전으로 지급하는 파견근로자의 주택수당은 급여에 해당됩니다.
3. 자녀의 학비지원금
 - 1)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학비지원금의 경우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사택 무료 제공
 - 1) 한국에서는 출자임원의 경우에만 사택 무료사용에 대해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태국에서는 사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환산하여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과 부과됩니다.

1. 개인소득세

복리후생비 성격의 급여 해당 여부

5. 고국 방문 비행기 표
 - 1)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주재원들이 년1회에 걸쳐 고국 방문시 지급되는 항공료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만 태국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6. 골프장 회원권, 스포츠 헬스클럽 회원권
 - 1) 골프회원권이나 스포츠 헬스클럽 회원권을 임원이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7. 의료비용
 - 1)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의 경우에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됩니다.(가족 포함)
8. 차량지원비
 - 1)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에 해당 되지 않음
 - 2)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근로소득에 해당됨

1. 개인소득세

복리후생비 성격의 급여 해당 여부

9. 단체 건강 보험료

- 1) 회사에서 단체로 건강보험에 가능하고 지불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한국의 경우 70만원한도내에서만 인정.

10. 기타 업무 관련 비용

- 1) 회사업무를 위한 출장비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2) 세미나 비용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1. 개인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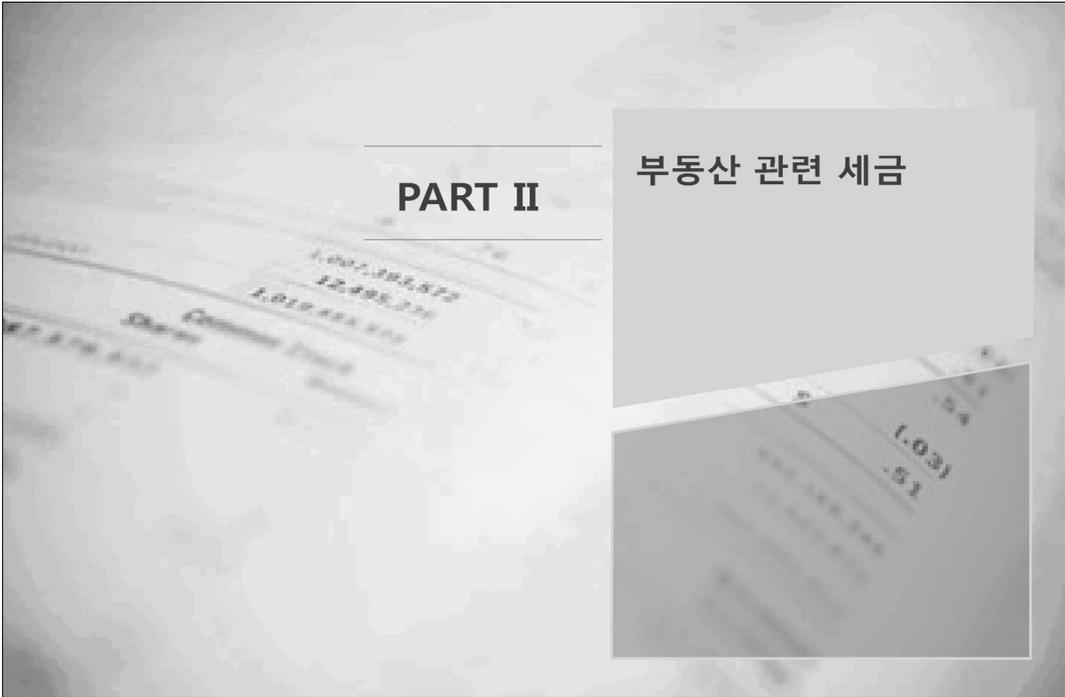
급여를 한국과 태국에서 이중으로 받는 경우

1. 근로소득세 부분

- 1) 파견주재원이 한국 본사와 태국 자회사에서 일정부분을 나눠서 받는 경우
 - i. 이유 : 소득세를 줄일수 있고, 주재원과 태국 현지 직원과의 급여차이로 인한 태국 근로자의 불만을 줄 일 수 있음. 한국의 4대보험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일정액을 한국에서 받고 일정액은 파견국에서 받고 있음.
 - ii. 태국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2. 법인세 부분

- 1) 한국 본사의 세무조사시 태국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 리스크에 노출됨.
- 2) 한국 국세청에서 소명하려면 태국 파견직원의 업무가 본사의 업무와 관련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함.



PART II

부동산 관련 세금

1. 부동산 관련 세금

재산세

1. 과세대상 : 주택 및 토지세, 지방개발세로 분류
2. 주택 및 토지세 : 상업적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 빌딩, 건물물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3. 세율 : 기본 12.5%이나 지방당국이 평가한 자산 가치에 따라 다양
4. 면제 : 직원 거주용, 축산용 및 농작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면제, 그 범위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다양.
5. 면세
 - 1) 왕실이 보유한 궁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빌딩
 - 2)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공병원 및 학교
 - 3) 종교 빌딩, 1년 이상 공실인 빌딩, 개인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빌딩
6. 신고 납부 : 건물과 토지가 위치한 지역 내 해당 지방정부에 매년 2월까지 신고, 신고 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납부
7. 신고불성실 가산금 : 200바트, 납부불성실 가산금 : 30일 이내 미납시 2.5%, 두달 이내 미납시 5%, 석달 이내 미납시 7.5%, 그리고 4달 이내 미납시 10%, 그 이후 체납할 경우 지방 정부가 몰수하여 처분 후 세금을 변제할 권리가 있음.

1.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 관련 세금

1. 개인 명의 콘도 구입 후 매각시 세금

- 1) **Transfer fee** : 최대 2%(세무당국이 평가한 금액)
- 2) **Specific Business Tax** : 3.3%(매도가액과 세무당국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
- 3) 양도차익 :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4) **Withholding tax**(장기보유 공제비율)

| 보유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이상 |
|------|-----|-----|-----|-----|-----|-----|-----|------|
| 공제율 | 92% | 84% | 77% | 71% | 65% | 60% | 55% | 50% |

2. 법인 명의 콘도 구입 후 매각시 세금

- 1) **Specific Business Tax** : 3.3% 대상(Stamp Tax 0.5%는 Specific Business Tax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 2) 양도차익 : 법인세 계산시 익금으로 계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됨(포괄주의 과세)
- 3) **Withholding tax** : 1%(매각가액)
- 4) **Transfer fee** : 2%(정부가 평가한 금액)

1. 부동산 관련 세금

특수사업세

1. 개요

- 1) 은행, 금융, 보험 및 증권업과 같은 특정사업은 특수사업세가 부과된다. 특수사업세 납부 대상 기업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부가세를 지급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지는 못한다. 매월 납세 신고 시 특수 사업세가 납부되어야 하며 특수 사업세 적용 대상 기업은 추가로 10%의 도시세가 부과된다.

2. 세부사항

| 사업 | 과세 표준 | 세율 |
|----------------|-----------------------------|-----|
| 은행, 금융 및 유사 사업 | 이자, 할인, 서비스 요금, 기타요금, 외환수익 | 3.0 |
| 금융, 증권, 신용토지금고 | 이자, 할인, 서비스 요금, 기타요금, 외환 수익 | 3.0 |
| 생명보험 | 이자, 서비스요금 및 기타요금 | 2.5 |
| 전당포업 | 이자, 요금, 기간만료자산 판매보수 | 2.5 |
| 부동산업 | 총 수령액 | 0.1 |



1. 부동산 관련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 1) 2016.2.1 상속세법이 발효됨
- 2) 1억6천 이상 자산 상속시 10% 부과,
- 3) 부모나 자식이 상속인인 경우 5%만 부과.
- 4) 이에 따른 영향으로 태국 내 생전 증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중 토지의 명의 변경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8% 증가함.

2. 증여세

- 1) 2016.2.1 태국 국회는 증여세법을 통과시켜 발효됨
- 2) 1년에 1인 이상에게 2천만 바트 이하 증여시 5%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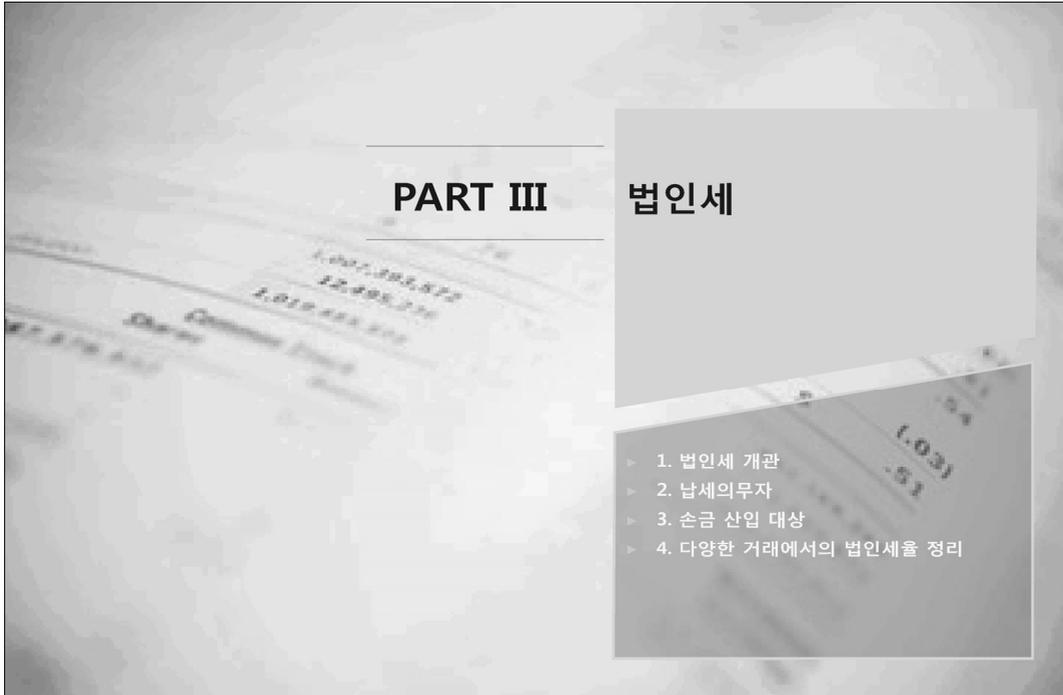
1. 부동산 관련 세금

인지세

- 1) 인지세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2) 주요 과세대상 및 세액

| 문서 종류 | 인지세율 |
|------------------|---------------------------|
| 부동산 임대계약(임대인) | 전체 임대계약금액의 0.1% |
| 주식 양도 계약(주식 양도인) | 매매가 또는 액면가 중 큰 금액의 0.1% |
| 리스 계약(자산소유자) | 리스 계약 총액의 0.1% |
| 하도급 계약(용역제공자) | 총 계약금액의 0.1% |
| 대출 계약(대여자) | 대출금액의 0.05%(10,000THB 한도) |

- 1) 가산세 : 인지세 탈루세액의 200% ~ 600%(한국의 경우 500%)
- 2)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인지세 누락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주의해야 함.



1. 법인세

1. 법인개 개관

- 1) 법인세율 (%) 20
- 2) 자본이득세율 (%) 20
- 3) 지정세율 (%) 20
- 4) 원천세율 (%)
 - 배당 10, 이자 15, 특허 및 노하우 등의 로열티 15, 지정 송금세 10
- 5) 이월결손금
 -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향후연도에 공제 가능 5년
- 6) 신고기한 : 회계기간 종료일 15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함.(중간예납이 있음)

2. 납세의무자 및 과세 대상

- 1) 법인세

태국 내국법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태국 내국법인이란 태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의 지점은 태국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음.
- 2) 납세의무자

법인 및 파트너십 기업은 태국 내 및 국외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금 목적의 법인 및 파트너십은 사기업 및 상장기업, 일반 등록 기업, 파트너십, 합작투자, 기관 및 협회로 정의된다.



1. 법인세

3. 법인세 계산시 공제 대상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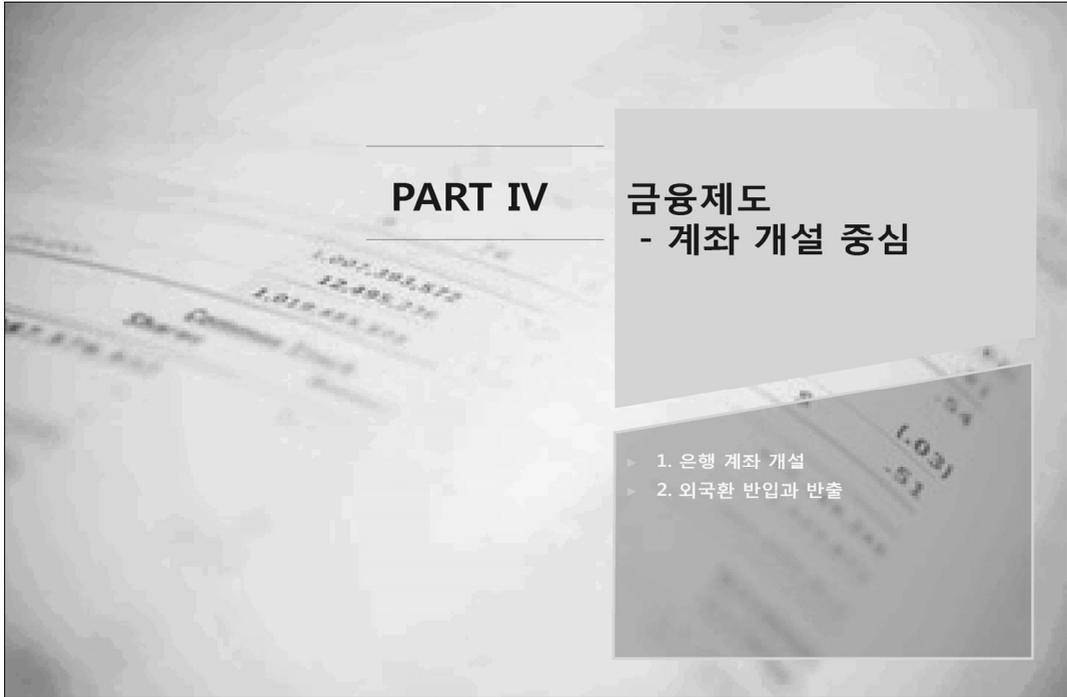
- 경상비(단, 경상비 중 **R&D비용**, 직업훈련비, 지체 장애자를 위한 설치비용은 **200%** 공제)
- 이자(단, 자본준비금에 대한 이자 또는 기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
- 세금(단, 태국 정부에 납입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제외)
- 대손상각비
- 소모품비
- 준비기금
- 총수입액의 **0.3%** 한도 또는 **1천만바트** 이하의 절대비
- 공공교육기간으로의 기부금, 공공시설 유지를 위한 기부금
- 감가상각비용

1. 법인세

4. 세율

- 기본 세율은 **20%**이나 납세자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세율이 적용된다

| 납세자 구분 | 세금부과기준 | 세율 |
|--|--------------|-----------|
| 소기업(자본금 5백만바트 미만 기업) | 순이익 30만바트 미만 | 면세 |
| | 순이익 3백만바트 미만 | 15% |
| | 3백만 바트 초과 | 20% |
| 기존 및 신규 SET상장기업 | 순이익 | 20% |
| 대체투자시장 투자 신규 등록 기업 | 순이익 | 20% |
| 국제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 순이익 | 10% |
| 국제운송담당 외국기업 | 총수입(총수령액) | 3% |
|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나 태국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외국기업 | 총수입(총수령액) | 10% |
|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나 태국에서 배당금외의 소득이 있는 외국기업 | 총수입(총수령액) | 15% |
| 태국외로 이윤을 처분하는 외국기업 | 처분액 | 10% |
| 이익단체 및 협회 | 총수입(총수령액) | 2% 또는 10% |



1. 금융제도 - 은행거래

보통예금과 계좌개설

1. 일반적인 보통예금 계좌로 통장을 가지고 입출금 및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
2. 계좌 개설 필요 서류
 - 1) 개인 : 여권 및 노동허가증(Work Permit)
 - 2) 법인
 - i. 법인계좌 개설을 명시한 이사회 회의록
 - ii. 사업자 등록증
 - iii. Memorandum
 - iv. 법인도장 등록증
 - v. 회사정관, 주주명부
 - vi. 회사대표 여권사본 및 노동허가증, 주식 20% 이상 소유자의 신분증



2. 외국환 반입 및 반출

외화 및 바트화의 반입 및 반출관련 규제

1. 외국환(Foreign Currency)

1. 외화를 태국 내로 반입하거나 송금받는 데 제한은 없음.
2. 해외로부터 외화를 송금 받는 자는 송금 받는 즉시 금액을 타국으로 송금 또는 환전하거나 360일 이내에 외국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3. 90일 미만의 체류 여행자, 대사관 및 국제기구 직원,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해외영주권을 지닌 태국인 이주자는 제외
4.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시에는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을 주로 고려해야 함.

2. 국내통화(Local Currency)

- 1) 태국으로 바트화 현금을 반입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 2) 중국 유난지역, 베트남을 포함하여 태국과 국경을 접한 국가를 여행하는 사람은 2백만바트를 반출할 수 있음. 다만, 45만 바트 이상 반출시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기타 국가로는 5만 바트를 반출 할 수 있음.



재태국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원고작성 및 편집

| | | | | |
|------------------------|---|-------|-------|-------|
| 국 | 세 | 청 | 최 청 흠 | 행정사무관 |
| | | 권 태 혁 | 세무조사관 | |
| | | 강 정 호 | 세무조사관 | |
| | | 최 근 수 | 세무조사관 | |
| EY 동남아 Korean Tax Desk | | 한 경 배 | 이사 | |

- * 아울러 본 책자는 2016년도 11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비 매 품〉〈Not For Sale〉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T. 82-44-204-2813

국세관련 세금상담 콜센터 T. 82-126